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

- 적격 수급업체 **선정가이드 라인** 포함 -



고용노동부

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공단



Contents

I 개요

1. 도급사업 정의	03
2.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필요성	04
3. 도급사업 현황	05
4. 도급사업 사망사고 사례	06
5. 도급사업 법위반 사례	10

II 도급사업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주요내용

1.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위한 도급제한	15
2. 산업재해예방 책임주체 확대	17
3. 건설업 산업재해예방 책임 강화	33

III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체계구축

1.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구성요소(기본)	43
2. 건설업 발주자의 안전보건관리	48
3. 공공기관 「안전근로협의체」 운영	63

IV 적격 수급업체 선정 가이드라인

1. 도급계약 입찰시 공지사항	67
2.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69
3. 평가결과 선정기준 및 환류	71

V 도급계약 시 명시하여야 할 사항

[부 록]

1.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세부기준	81
2. 도급 시 산업재해예방 운영지침(고용노동부)	87

발 간 사

정부는 하청 노동자 안전보건관리 강화를 위해 원청의 책임 확대,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기 위한 유해·위험작업 도급제한 등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하여 '20.1.16.부터 전면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도급인의 수급인(하청)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책임범위를 수급인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도급인 사업장 전체와 도급인이 제공·지정한 장소로서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위험 장소로 확대하여,

도급인이 수급인 근로자의 작업 장소, 시설 등 위험에 대하여 지배·관리권이 있다면 도급의 유형, 위험장소, 사업의 목적여부와 관계없이 수급인 근로자의 안전·보건조치에 대해 책임 지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산업재해 예방 능력을 갖추지 못한 영세업체가 도급을 받아 소속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당하는 문제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능력이 충분한 수급인과 도급계약을 체결하도록 의무화 하였습니다.

무엇보다 도급사업의 특성상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생산을 총괄적으로 지휘·관리 하는 도급인이 자신의 근로자는 물론이고, 수급인 근로자의 안전과 생명도 보호하여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간하는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에 도급인의 의무 위반사례 및 우수 사례 등을 제시하고 도급인이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있는 수급인을 선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을 제시하였습니다.

이 매뉴얼을 통하여 도급사업에서 수급업체의 안전보건관리 역량을 높이는 한편, 수급인 근로자를 작업 중 노출되는 산업재해로부터 보호하여 보다 안전한 일터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20. 7.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 박영만



I

개요

1. 도급사업 정의	03
2.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필요성	04
3. 도급사업 현황	05
4. 도급사업 사망사고 사례	06
5. 도급사업 범위반 사례	10

I

개요

1 도급사업 정의

- **(정의)** 도급이란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함
 - **도급인**이란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하는 사업주를 말함. 다만, 건설공사발주자는 제외
 - **수급인**이란 도급인으로부터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받은 사업주를 말함
 - **관계수급인**이란 도급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에 각 단계별로 도급받은 사업주 전부를 말함
 - **건설공사발주자**란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함

※ 도급의 형태 : 도급계약의 목적에 따라 <납품도급>과 <업무도급>으로, 도급작업 장소에 따라 <사내도급>과 <사외도급>으로, 도급업무의 작업난이도에 따라 <위험도급>과 <단순도급>으로, 수급인의 적격성에 따라 <전문도급>과 <단순도급>으로 일반적 구분
- **(도급인의 의무)** 도급인은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가장 잘 알고 있으므로 도급인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재예방을 위하여 안전·보건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보건조치 의무가 부여됨
 - ※ 단,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 조치(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제외
 -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 ① 안전·보건협약체 구성 및 운영 ② 작업장 순회점검 ③ 수급인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을 위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지원 ④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 실시 확인 ⑤ 화재·폭발, 지진 등에 대비한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⑥ 휴게시설, 그 밖에 시설 설치 등을 위한 장소의 제공 또는 도급인이 설치한 시설 이용에 관한 협조

2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필요성

◇ 산업구조의 변화로 외주화가 확대·심화되고, 특히 유해·위험한 작업 등의 도급에 의해 관계수급인(하청) 근로자의 사망사고가 빈발함

☞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해서는 도급인의 역할 및 하나의 협력적 공동체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함

- 수급업체는 도급업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전보건관리능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유해·위험 작업을 도급받아 작업을 함에 따라,
 - 태안발전소 컨베이어 끼임 사망사고 및 이천 냉동창고 화재사고와 같이 수급업체 근로자 사망재해가 지속 발생하여 도급인의 안전보건관리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되고 있음
- 또한, 수급업체는 도급업체에 비하여 위험성이 높은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아 산업 재해에 노출 가능성이 크며,
 - 작업장소가 도급업체의 지배·관리하에 있기 때문에 스스로의 노력만으로는 재해예방에 한계가 있음
- 따라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도급에 관한 정의 등을 새로이 규정하고, 유해한 작업의 도급을 금지하는 등 도급에 관한 산업재해예방 규율체계를 전반적으로 재구축하여
 -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은 사내도급을 금지 또는 승인을 받도록 제한하였고, 승인받은 작업의 재하도급 금지 및 도급 시 산재예방 능력을 갖춘 수급업체에게 도급하도록 **적격 수급인 선정의무**가 신설되었음
 - 수급인 근로자 보호를 위한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의 책임 범위가 대폭 확대 되었으며, 도급인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처벌 수준도 강화 되었음
 - 이 외에도 관계수급인 근로자 보호를 위한 협의체 운영 및 작업장 순회점검 등 도급인 으로서의 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가 강화되었음

3 도급사업 현황

• 사내하도급 현황

- 외환위기 이후 외주화 방식인 간접고용의 확산은 우리사회에서 점차 일반화되고 있으며, 도급업체 내의 설비의 수리, 원재료나, 제품의 포장, 운반 등 비교적 유해·위험성이 높은 작업을 분담하는 경우가 많음. 2018년 사업체패널조사 결과에 따르면 하청·용역 근로자의 대다수는 단순직에 종사하고 있는데 그 비중은 58.7%이고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은 생산직으로 19.8%를 차지함
- 사업체 규모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으나, 단순직은 서비스업 등 비제조업체에서의 비중이 제조업 보다 높았고, 생산직은 제조업에서 집중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사업체별 하청근로자 주요직종]

(단위 : %)

구 분			관리직	전문직	사무직	서비스직	판매직	생산직	단순직
계			0.3	3.0	1.3	14.1	2.9	19.8	58.7
2015년	규모	30~99인	0.0	2.7	0.2	15.6	1.9	23.0	56.6
		100~299인	0.9	3.7	2.6	12.1	5.7	12.0	63.0
		300~499인	0.3	6.7	4.9	3.4	1.0	23.6	60.1
		500인이상	0.0	1.1	3.8	15.1	0.8	19.2	60.0
	산업	제조업	0.0	0.1	1.1	5.0	0.9	54.3	38.6
		비제조업	0.4	4.6	1.4	18.9	3.9	1.5	69.4

- 하청·용역근로자의 경우 활용이유는 고용유연성, 업무성격, 인건비 절감의 순으로 나타났음

[사업체별 하청근로자 활용이유]

(단위 : %)

구 분			인건비절감	고용유연성	업무성격	정원동결	기타
계			24.6	40.9	30.6	3.2	0.8
2015년	규모	30~99인	25.0	39.2	31.4	3.7	0.7
		100~299인	23.5	44.6	27.8	2.8	1.2
		300~499인	26.4	51.7	22.0	0.0	0.0
		500인이상	23.6	32.7	41.3	1.7	0.6
	산업	제조업	35.7	37.3	25.0	0.1	1.9
		비제조업	18.7	42.7	33.6	4.8	0.2

4 도급사업 사망사고 사례

1. 사망사고 사례

-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대형사망사고가 다발하고 있으며,
 - 유증기 등에 의한 화재·폭발사고가 다발하고, 2명 이상이 사망하는 중독·질식 대형사고도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음

[대형 사망사고]

연번	재해발생일	사업장명	사고내용	원/하청 구분	사망	부상
1	'18.12.10	한국○○발전(주)	컨베이어 낙탄 제거작업중 컨베이어에 끼임	하청	1명	
2	'19.02.14	(주)○○대전사업장	추진체 이형작업중 폭발	원청	3명	2명
3	'19.03.18	○○건설(주)	에너지종합타운 건설현장 데크플레이트 붕괴	하청	3명	
4	'19.05.13	(주)○○화학	발열반응기 폭발	원·하청	3명	1명
5	'19.08.14	○○기업	건설작업용 리프트 마스트 해체작업중 붕괴	하청	3명	1명
6	'20.04.29	○○프레스 물류센터 신축공사	물류창고 신축공사 중 지하에서 화재	하청	38명	10명

[대형 중독·질식사고]

연번	재해발생일	사업장명	사고내용	원/하청 구분	사망	부상
1	'19.09.10	○○수산	오징어 가공업체 폐집수조에서 황화수소 질식	원청	4명	
2	'20.04.09	(주)○○건설	부산 하수도 공사장에서 유독가스 질식	하청	3명	

2. 사망사고 처벌현황

연번	사고내용	하청업체		형사처벌 대상	
		사망	부상	원청	하청
1	항타기를 이용해 파일 항타작업 완료 후 작업 확인을 위해 파일에 접근하다 항타기 오거에 붙은 점토 흙덩어리가 떨어져 맞음	1명		현장소장	대표, 법인
2	파라펫 거꾸집 자재가 낙하하여 맞음	1명		현장소장, 법인	대표, 법인
3	저장탱크 방유제에 밸브를 설치 작업중 배수로 콘크리트 파쇄작업중 분진이 날리지 않도록 회수 펜탄 저장탱크 드레인밸브에 연결된 호스를 이용 살포하다가 분리기 내에 있던 펜탄이 나오면서 그라인더에서 발생한 스파크에 화재발생	1명	1명	공장장, 법인	현장소장, 법인
4	사일로 하부 측면에 맨홀을 설치하기 위해 구멍을 뚫은 후 맨홀을 붙이는 작업중 사일로 내부에 잔존한 분진이 용접불꽃에 점화되어 폭발	6명	9명	공장장, 법인	현장소장, 법인
5	해치커버 위에 있던 14번 해치커버를 크레인을 조작하여 7번 홀드로 이동중 작업자가 홀드 바닥으로 추락	1명		법인	-
6	타워크레인 상승작업을 위해 두 번째 마스트를 텔레스코핑 케이지 안으로 이동시키던중 턴테이블이 우측으로 선회하면서 붐대 등 상부 전체가 슬라브 바닥으로 넘어지면서 추락	1명	1명	현장소장, 법인	대표, 법인
7	기동 거꾸집 해체 작업을 위해 타워크레인 슬링 벨트 샤클을 기동 거꾸집에 체결하던중 하부 작업자가 샤클 체결이 완료된 것으로 오인하여 하부 지지대를 임의 해체하면서 기동 거꾸집이 전도되어 추락	1명		대표, 법인	현장소장, 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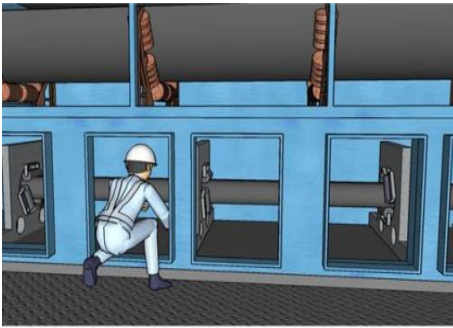
〈도급인 처벌 강화〉

- 개정 산업안전보건법(2020. 1. 26. 시행)에서는 도급인이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그 처벌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기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
- 특히,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사업주와 동일한 수준으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부과 신설

3. 사망사고 유형

● 도급인의 사전 안전조치 미흡

- ▶ 도급인이 관리하는 시설물의 안전조치가 미흡한 상태에서 수급업체 근로자가 방호장치 없는 기계기구에서 작업 실시하여 위험에 노출



- 개방된 점검구에서 설비의 이상 유무를 확인 하던 중 압축기에 끼여 1명 사망



- 가동 중인 컨베이어 하부에서 청소 작업 중 벨트와 롤러 사이에 끼여 1명 사망

● 유해·위험정보 사전 미 제공

- ▶ 작업 관련 유해·위험정보를 도급인이 제공하지 않아 수급인의 위험예측과 사전 대응 미흡



- 하수처리시설 내 인화성가스로 폭발위험 분위기가 조성된 장소에서 전기기계기구를 사용하여 폭발 2명 사망



- 콘크리트 양생 고체연료를 교체하기 위해 현장에 들어갔다 일산화탄소 질식 2명 사망

● 혼재 작업 시 도급인 안전관리 소홀

- ▶ 같은 작업장 내에서 다른 근로자들이 혼재하여 작업하는 경우, 각 업체의 안전조치에 대한 도급인의 조정 및 관리 소홀로 대형사고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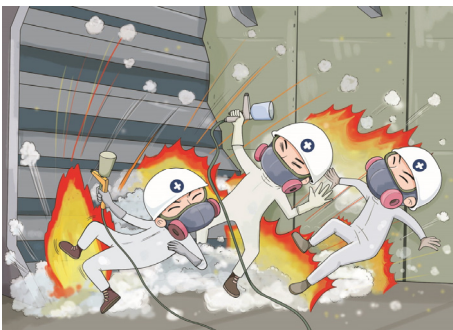
- 조선소 골리앗크레인과 지브크레인이 충돌하여 지브크레인의 메인지브가 낙하하여 6명 사망 25명 부상



- 건물지하 설비공사현장에서 다수 하청근로자가 동시 작업 중 용접불티에 의한 화재 8명 사망

● 안전이 고려되지 않은 계약 관행

- ▶ 원가절감, 공기단축을 우선하는 계약으로 충분한 사전 안전성 검토 없이 작업 진행



- 건조중인 선박 탱크내부에서 스프레이 도장 작업 중 환기 불충분으로 폭발위험 분위기가 형성되어 화재·폭발 4명 사망



- 냉각탑 내부 내장재(충전재) 교체 작업을 하던 중 냉각탑 내부로 유입된 질소에 의해 질식 4명 사망

5 도급사업 범위반 사례

1. 국내사례

사례 1

트럭운전기사를 고용한 지입차주는 지입회사와 계약한 후 건설현장에서 운반작업중 트럭고장으로 수리작업을 하던 운전자가 적재함에 끼이는 사망사고에 대해 법원은 **정비자격이 없는 운전기사 방치** 및 **정비를 게을리 한** 지입차주와 안전교육을 게을리 한 지입회사에게 책임을 물음

사례 2

교각제작공사 하청업체 근로자가 철근조립작업 중 철근지지대 수량부족 등으로 수직 철근에 맞아 사망한 사고에 대해 법원은 하청업체 현장소장에게는 무죄를 선고하면서 적절한 수량의 **철근지지대가 충분히** 설치되도록 **감독**하는 등 주의를 위반한 컨소시엄 주관회사(원청회사) 현장소장에게는 책임을 물음

사례 3

선박수리 작업장에서 도급업체와 수급업체 간 도급계약을 하고 수급업체에 고용된 일용근로자가 선박갑판 위에서 작업 중 분사장치에 연결된 압축호스가 선박 밖으로 떨어지면서 그 반동으로 지상으로 추락한 사고에 대해 법원은 **도급업체는 선박이 좁고 위험한 곳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주의하라는 안전교육 및 작업지시 하였고,** 일용근로자가 지급한 안전모, 안전띠 등을 착용하지 않고 작업하다가 사고가 발생 하였으므로 **도급업체에게 책임의 일부만** 물음

사례 4

고밀도 폴리에틸렌 사일로에 있던 인화성물질을 제거하지 않은채 화기작업으로 화재 및 폭발사고로 다수 사망사고에 대해 법원은 도급을 준 원청업체 공장장에게 **동시 보수작업 및 인력을 보강**하지 않는 등 **구조적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하여 공장장에게 책임을 물음

사례 5

물류창고 신축공사 현장에서 크레인 작업중 유로품을 떨어트려 다수의 사망사고에 대해 법원은 해당 신축공사를 일괄 도급받은 원수급업체 안전보건총괄책임자에게 **무리하게 공기단축**을 시도하는 등 산업재해예방 직무를 게을리 한 책임을 물음

2. 해외사례

사례 1

○○모리스사가 선정한 위탁업체가 독극물을 처리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은 필립모리스사가 업체선정에 있어 **부적합한 업체**를 **선정**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하여 원청업체의 책임을 물음

사례 2

○○마트사가 건설업자를 선정하여 장비 대여료를 절감하고자 월마트 장비를 사용하여 작업하던중 **장비의 결함**으로 인해 작업자가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은 발주자인 월마트에게 결함장비 제공한 책임을 물음

사례 3

○○제약회사가 하청업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하청업체는 재하청업체와 계약하고 용접작업을 하던중 철재 나사가 풀려 무너져 재하청업체 직원이 다친 사고에 대해 산재보상을 받고 법원은 **발주사와 하청업체**에게 책임을 물음

사례 4

○○건설 발주자가 하청업체와 계약하고 공사를 하던중 하청업체 직원이 낙하물에 기인하여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은 **낙하물이 상습적으로 떨어지는 장소**에서 다치게 한 발주자에게 공사장을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책임을 물음

사례 5

○○건설 발주자가 작업에 관해 매주 미팅을 주관하여 공사의 위험성 등에 대해 회의, 공사장 순찰 등을 통해 발주자가 **위험성을 발견**하였지만 **공사를 중단하지 않아** 법원은 발주자에게 책임을 물음



II

도급사업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주요내용

1.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위한 도급제한	15
2. 산업재해예방 책임주체 확대	17
3. 건설업 산업재해예방 책임 강화	33

II

도급사업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주요내용

1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위한 도급제한

1. 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

- 유해위험성이 매우 높은 ▲도급작업 ▲수은·납·카드뮴의 제련·주입·가공·가열 작업 ▲허가 물질* 제조·사용작업에 대해 사내 도급을 금지
 - ※ 디클로로벤지딘, 베릴륨, 비소, 염화비닐 등 12개 화학물질(시행령 제88조)
- 다만, 상시 인력의 고용이 어려운 일시·간헐적 작업과 도급인의 사업운영에 필수 불가결한 경우로서 수급인이 보유한 전문적 기술활용 목적의 도급은 예외로 하되,
 - ☞ 일시적 작업은 30일 이내 종료되는 1회성 작업이며, 간헐적 작업은 연간 총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작업으로 제한(예, 허가대상물질 비소화합물 촉매 교체 작업으로 10개월마다 하는데, 특수장비가 필요하며 통상 작업기간은 25일이 소요되어 해당 작업에 필요한 인력을 고용하기 어려운 경우)
- 전문적 기술활용 목적의 도급인 경우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를 통해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 전문적 기술이란 도급인이 습득·보유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기술임이 지정, 고시, 공고, 인증, 특허 등에 의해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
- 승인기간은 3년이며, 연장 및 변경시에도 승인 필요

✓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4조(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의 내용 등) ~ 제77조(도급승인의 취소)
 - ☞ 위반에 대한 조치
 - 10억원 이하의 과징금

2. 도급의 승인

- **(대상)** 중량비율 1% 이상의 황산, 불화수소, 질산, 염화수소를 취급하는 설비를 개조·분해·해체·철거하는 작업 또는 해당 설비의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 다만, 도급인이 해당 화학물질을 모두 제거한 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한 경우는 제외

☞ 제거방법 : 배관·설비 등 화학물질 제거(Draining) → 초순수·용수 및 질소 등을 잔여물, 치환가스가 남아 있지 않도록 배관·설비 세척 및 치환

↳ (제거증명자료) ①안전작업 절차서 및 작업구간, 세정방법 등을 포함한 내용 ②화학물질 제거 전·후 현장사진 ③pH meter 검증자료(황산, 불산, 질산, 염산(액상)-결과값은 중성 pH 5.8~8.6) 또는 가스검지기 측정결과(불화수소, 질산, 염화수소-결과값은 불검출(가스검지기 교정성적서 포함)

- **(제출기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 **(제출서류)**

- ① 도급승인 신청서, 연장신청서, 변경신청서
- ② 도급대상 작업의 공정 관련 서류 일체(기계·설비의 종류 및 운전조건, 유해위험물질의 종류·사용량, 유해위험요인의 발생 실태 및 종사 근로자 수 등 포함)
- ③ 도급작업 안전보건관리계획서(안전작업절차, 도급 시 안전보건관리 및 도급작업에 대한 안전보건 시설 등 포함)
- ④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 결과(변경승인 시에는 미 해당)

✓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9조(도급의 승인)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1조(도급승인 대상 작업)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8조(도급승인 등의 신청)
 - ☞ 위반에 대한 조치
 -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도급한 경우 10억원 이하의 과징금

3. 도급의 승인 시 하도급 금지

- 도급 승인 대상 작업으로 승인을 받아 도급한 작업의 하도급을 금지함

✓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60조(도급의 승인 시 하도급 금지)
 - ☞ 위반에 대한 조치
 - 재하도급한 경우 10억원 이하의 과징금

4. 적격수급인 선정 의무

- 수급인 선정 시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해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한 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2 산업재해예방 책임주체 확대

5. 산업재해 통합관리

☞ '18년부터 산업재해 통합관리제도 시행에 따라 도급인이 수급인의 재해까지 통합적으로 관리

※ 도급인의 사업장(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경우로서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관계수급인만 포함

- 대 상
 - (업종) 제조업, 철도운송업, 도시철도운송업, 전기업(표준산업분류 기준)
 - (규모) 도급인의 상시 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사업장

● **산업재해현황 조사표 제출**

- 도급인은 「통합 산업재해 현황 조사표」를 작성하여 매년 4월 30일까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도급인은 조사표를 작성하기 위해 수급인 사업주에게 필요한 경우 자료 요구 가능

● **공표대상 사업장**

- 도급인이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입은 경우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장은 도급인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을 함께 공표

-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연간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 사망만인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만인율 이상인 사업장
-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사업장 등

✓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 제2항~제3항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0조(공표대상 사업장)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조(도급인과 수급인의 통합 산업재해 관련자료 제출) 및 별지 제1호 서식
 - ☞ 위반에 대한 조치
 - 관계수급인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6.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지정

- ☞ 도급인과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총괄적이고 체계적인 안전보건관리를 위하여 안전보건총괄 책임자를 지정하여 산재예방업무를 총괄·관리

● **대 상**

- 도급인, 수급인과 하수급인 근로자를 포함한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사업
- ※ 선박 및 보트 건조업, 1차 금속제조업, 토사석 광업은 50명 이상

- 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공사의 총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건설업

●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

- ① 위험성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
- ② 작업의 중지 및 재개
- ③ 도급사업 시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 ④ 수급인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집행 감독 및 사용 협의·조정
- ⑤ 안전인증대상 및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 등의 사용여부 확인 등

● **지정방법**

- 도급인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고 선임 사실 및 업무의 수행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춰둬야 함

※ 관리책임자를 두지 않아도 되는 사업은 그 사업장에서 사업을 총괄관리하는 자를 안전보건총괄 책임자로 지정

✓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2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대상사업) 및 제53조(안전보건총괄 책임자의 직무 등)
 - ☞ 위반에 대한 조치
 -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7. 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를 부담하는 도급인 확대

- 도급인의 사업장 전체와 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장소로서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장소(21개 위험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장소, 시설 등의 위험에 대하여 지배·관리권이 있다면 도급의 유형, 위험장소, 사업의 목적 여부 등에 관계없이 안전 및 보건 조치를 실시하여야 함
 - ※ 관계수급인 : 여러 단계에 걸쳐 도급이 체결된 경우 각 단계별 도급을 받은 사업주 전원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장소(21개)

1. 토사·구축물·인공구조물 등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장소
2. 기계·기구 등이 넘어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장소
3. 안전난간의 설치가 필요한 장소
4. 비계 또는 거꾸집을 설치하거나 해체하는 장소
5. 건설용 리프트를 운행하는 장소
6. 지반을 굴착하거나 발파작업을 하는 장소
7. 엘리베이터홀 등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8. 석면이 붙어 있는 물질을 파쇄 또는 해체하는 작업을 하는 장소
9. 공중 전선에 가까운 장소로서 시설물의 설치·해체·점검 및 수리 등의 작업을 할 때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장소
10.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11. 프레스 또는 전단기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장소
12.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또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장소
13. 전기 기계·기구를 사용하여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장소
14.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차량을 포함한다)에 의한 충돌 또는 협착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장소
15. 화재·폭발 우려가 있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는 장소
 - 가. 선박 내부에서의 용접·용단작업
 - 나. 인화성물질을 취급·저장하는 설비 및 용기에서의 용접·용단작업
 - 다. 특수화학설비에서의 용접·용단작업
 - 라. 가연물이 있는 곳에서의 용접·용단 및 금속의 가열 등 화기를 사용하는 작업이나 연식숯돌에 의한 건식연마작업 등 불꽃이 될 우려가 있는 작업
16. 양중기에 의한 충돌 또는 협착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장소
17. 유기화합물취급 특별 장소
18. 방사선 업무를 하는 장소
19. 밀폐공간
20. 위험물질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장소
21.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 대한 정비·보수 작업이 이루어지는 장소

✓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조(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장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조(도급인의 안전·보건 조치 장소)

☞ 위반에 대한 조치

-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8.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조치

☞ 도급인은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함

※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 사용하는 사업은 제외

✓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 위반에 대한 조치

-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9.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및 운영

☞ 도급 사업 시 안전보건에 관한 각종 협의를 위하여 도급사업주와 수급사업주 간 안전보건 협의체 구성 및 운영

※ 공사금액 120억원(토목공사 150억원) 이상인 건설업은 노사협의체로 안전보건협의체 갈음 가능

● 구성 및 운영

- 도급인 및 수급인 전원으로 협의체를 구성
-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

● 협의체 계획수립 시 고려사항

- 협의체 구성 및 운영방안

- 협의체 심의의결 사항 및 시행 방안
- 도급인, 수급인 간 책임과 권한 명확화

● 협의사항

- 작업의 시작 시간
-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 방법
-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 방법
-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 사업주와 수급인 또는 수급인 상호간의 연락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참고

● 노사협의체 구성·운영

- 대상 : 공사금액 120억원(토목공사 150억원) 이상
- 구성

- (근로자 위원)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의 근로자대표, 명예감독관 1명(명예 감독관이 위촉되지 않은 경우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근로자 1명), 공사금액 20억원 이상 도급 또는 하도급사업의 근로자 대표
- (사용자 위원) 해당 사업의 대표자, 안전관리자 1명, 보건관리자 1명(보건관리자 선임대상 건설업 한정), 공사금액 20억원 이상인 공사의 관계수급인

※ (합의시) 공사금액 20억원 미만 공사의 관계수급인 및 근로자대표를 위원으로 위촉 가능

- 협의사항

- 산업재해예방 방법 및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의 대피방법
- 작업의 시작시간, 작업 및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 그 밖의 산업재해예방과 관련된 사항
- 운영 : 노사협의체는 정기회의는 2개월마다, 임시회의는 필요시 개최

✓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제1항 제1호, 제75조(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등의 구성·운영에 관한 특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3조(노사협의체의 설치 대상), 제64조(노사협의체의 구성), 제65조(노사협의체의 운영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9조(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제93조(노사협의체 협의사항 등)
 - ☞ 위반에 대한 조치
 - 5백만원 이하의 벌금

▶ 작업장의 순회점검

☞ 도급인 사업주는 작업장을 정기적으로 순회점검(1주일에 1회 이상) 실시

※ 단, 건설업, 제조업, 토사석 광업, 서적·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금속 및 비금속 원료 재생업은 2일에 1회 이상 실시

- 관계수급인은 순회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해서는 아니되며, 도급인의 시정요구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함

참고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작업장 순회점검」은 사업주 의무이나, 반드시 사업주가 직접 실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 사업주가 경영관리, 시간적인 이유 등으로 직접 점검이 곤란하여 관리감독자 등에게 순회점검을 하도록 한 경우에는 점검의 결과 및 조치의 이행여부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는 것으로 가능
 - 다만, 사업주의 지시에도 관리자가 순회점검을 하지 아니한 경우 동 규정 위반에 대한 법상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음

✓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제1항 제2호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0조(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 등)
 - ☞ 위반에 대한 조치
 - 5백만원 이하의 벌금

▶ 안전·보건교육 지원 및 실시 확인

- ☞ 도급인은 수급인이 실시하는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에 필요한 장소를 제공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조치 필요
- ☞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특별안전보건교육의 실시 여부 확인

- 도급인은 관계수급인이 실시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필요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을 요청받은 경우 협조하여야 함

〈안전보건교육 지원 예시〉

- 수급업체가 자체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 및 지도
- 지원내용 : 교육장소, 교육 기자재(컴퓨터, 빔 프로젝트 등), 안전교육 교재 등
- 도급사(공사팀장, 안전관리자)와 수급사(관리감독자, 작업책임자)가 공동으로 실시

✓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제1항 제3호 및 제4호,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제3항
- ☞ 위반에 대한 조치
- 5백만원 이하의 벌금

▶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 ☞ 위험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사고발생에 대비하여 경보를 운영하고, 수급인에게 통보 하여 사고위험에 신속히 대처하도록 운영

- 도급인은 수급인 및 수급인 근로자에 대해 발파작업을 하는 경우, 화재·폭발, 토사·구축물의 붕괴 또는 지진 등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경보체계를 운영하고 경보운영, 대피방법 등을 훈련하여야 함

경보장치 설치가 필요한 장소(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① 하역운반기계 통로 인접 출입구 : 비상등·비상벨 등 경보장치(제11조)
- ② 연면적 400㎡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옥내 작업장 : 경보설비(제19조)
- ③ 폭발 또는 화재발생 위험장소 : 가스검지 및 경보장치(제232조)
- ④ 급성독성물질 취급 장소 : 감지·경보장치(제299조)
- ⑤ 터널공사 등 인화성가스 폭발·화재 위험장소 : 자동경보장치(제350조)
- ⑥ 금속류, 산·알칼리류, 가스상태 물질류 취급 장소 : 경보설비(제434조)
- ⑦ 방사선 업무 장소 : 경보시설(제574조)
- ⑧ 냉장실·냉동실 내부 : 경보장치(제632조)

✓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제1항 제5호
 - ☞ 위반에 대한 조치
 - 5백만원 이하의 벌금

▶ **수급업체 위생시설 설치 또는 이용**

☞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위생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거나 도급인의 위생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

- 도급인은 수급인이 위생시설(휴게시설, 세면·목욕시설, 세탁시설, 탈의시설, 수면시설)에 관한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 수급인에게 위생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거나 자신의 위생시설을 수급인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함

✓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제1항 제6호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1조(위생시설의 설치 등 협조)
 - ☞ 위반에 대한 조치
 - 5백만원 이하의 벌금

▶ 작업장 합동 안전·보건점검

☞ 도급인 사업주는 수급인 사업주와 점검반을 구성하여 정기·수시로 합동 안전·보건점검 실시

- **(구성)** 도급인 및 관계수급인 사업주*, 도급인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 각 1명
 - * 같은 사업내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 관계수급인의 근로자는 해당 공정 근로자만 해당(수급인이 다수인 경우 각 수급인 소속 근로자 1명씩 점검에 참여하되, 해당 공정에 참여)
- **(점검주기)** 분기에 1회 이상
 - 단, 건설업·선박 및 보트 건조업은 2개월에 1회 이상

✓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제2항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2조(도급사업의 합동 안전·보건 점검)
 - ☞ 위반에 대한 조치
 - 5백만원 이하의 벌금

▶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 도급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규정에 수급인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

-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대상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대상 사업의 종류 및 규모]

사업의 종류	규모
1. 농업 2. 어업 3.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4.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5. 정보서비스업 6. 금융 및 보험업 7. 임대업; 부동산 제외 8.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연구개발업은 제외) 9. 사업지원 서비스업 10. 사회복지 서비스업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업을 제외한 사업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

-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 각 사업장에 게시하거나 갖춰두고 이를 근로자에게 알려야 함
- 안전보건관리규정에는 「수급인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내용(예시)]

- 총칙
 -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의 목적 및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
 - 사업주 및 근로자의 재해예방 책임 및 의무 등에 관한 사항
 - 하도급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 관리조직과 그 직무
- 안전·보건교육
- 작업장 안전관리
- 작업장 보건관리
-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
-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 위험성평가의 실시 시기 및 방법, 절차에 관한 사항
 -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5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 ☞ 위반에 대한 조치
 -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 위험성평가

☞ 도급인은 수급인으로 하여금 수급인의 작업 및 해당 사업장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도급인과 수급인 또는 수급인 간의 작업 및 위험요인이 서로 관련되는 경우 이를 조정·관리하여야 함

- 위험성평가란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행동, 그 밖의 업무에 기인하는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위험성을 결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는 일련의 절차임
-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위험성평가 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수급인이 자발적으로 위험성평가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 수급인의 위험성 평가능력이 부족할 경우 도급인이 수급인을 참여시켜 수급인 작업공정에 대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음
 -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직무에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도급인은 수급인의 작업에 대해서까지 위험성평가를 관리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도급인·수급인 관계없이 위험성평가의 주체를 사업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 수급인은 해당 사업장 또는 공정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직접 실시해야 하고, 도급인이 지원 하는 위험성평가 및 관련 교육에 성실히 참여하고,
 - 사업주, 관리자, 근로자 등 구성원 모두가 위험성 평가에 참여하여 스스로 위험성평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야 하며,
 -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후에는 ①위험성 평가 대상의 유해위험요인 ②위험성평가의 결과 ③위험성 결정에 따른 조치사항 등에 대한 자료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함

✓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제62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7조(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의 기록·보존)

▶ 작업환경측정

 관계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수급인의 작업장소에 대한 작업환경측정을 실시

- 작업환경측정은 작업 시 발생하는 소음, 분진, 유기용제 등 유해인자에 대하여 근로자의 노출 정도를 측정·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시설·설비 등을 개선하여 쾌적한 작업환경을 만들기 위한 제도임
 - 사업장 규모에 상관없이 근로자 1명 이상을 고용한 사업장으로서 작업환경측정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이 측정대상임
 - * ①유기화합물, 금속류, 산·알칼리류, 가스상 물질류, 허가대상물질, 분진, 금속가공유 등 화학적 인자(188종), ②8시간 시간가중평균 80dB 이상의 소음 및 안전보건규칙 제558조에 따른 고열 등의 물리적 인자(2종)
- 수급인이 작업환경측정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작업을 하는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의 작업장소를 포함하여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해야 함
-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해당 시설·설비의 설치·개선 또는 건강진단의 실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
- 임시작업*, 단시간작업**,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허용소비량을 초과하지 않는 작업, 분진작업 적용제외 작업장 등은 작업환경 측정 대상에서 제외
 - * 임시작업: 일시적으로 하는 작업 중 월 24시간 미만인 작업. 단, 월 10시간 이상 24시간 미만인 작업이 매월 행하여지는 작업은 제외
 - ** 단시간작업: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시간이 1일 1시간 미만인 작업. 단, 1일 1시간 미만인 작업이 매일 수행되는 경우 제외

✓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작업환경측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86조(작업환경측정 대상 작업장 등) ~ 제190조(작업환경측정 주기 및 횟수)
- ☞ 위반에 대한 조치
 - 작업환경측정을 하지 않는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작업환경측정 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작업환경측정의 방법을 준수하지 않은 자,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 근로자대표가 요구하였는데도 근로자대표를 참석 시키지 않은 자,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 해당 시설·설비의 설치·개선 또는 건강진단의 실시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해당 작업장 근로자에게 아니한 자,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10.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등

☞ 도급인은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해당 작업 시작 전에 수급인에게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문서로 제공

- 안전보건정보 제공 대상작업
 - 폭발성·발화성·인화성·독성 등 유해성·위험성이 있는 화학물질 또는 그 화학물질을 함유한 혼합물을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반응기·증류탑·배관 또는 저장탱크로서 설비를 개조·분해·해체 또는 철거하는 작업 또는 설비의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 산소결핍, 유해가스 등으로 인한 질식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 토사·구축물·인공구조물 등의 붕괴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등
- (제공방법 및 시기) 해당 작업 시작 전 문서로 제공하여야 함
 - ※ 하도급 시 수급인은 도급인에게 제공받은 문서의 사본을 하수급인에게 하도급 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제공하여야 함

- **(제공자료)**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서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위험물질 및 관리 대상 유해물질의 명칭과 그 유해성·위험성
 -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대한 안전·보건상의 주의사항
 - 유해하거나 위험한 물질의 유출 등 사고 발생시 필요한 조치의 내용
- **(확인 의무)** 도급인은 수급인의 근로자가 제공된 정보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받고 작업을 수행 하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정보 미제공)** 수급인은 도급인이 정보 미 제공시 작업을 하지 않을 수 있으며, 계약의 이행 지체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음

✓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65조(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4조(질식 또는 붕괴의 위험이 있는 작업)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3조(안전·보건 정보제공 등) ~ 제85조(질식의 위험이 있는 장소)
 - ☞ 위반에 대한 조치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11.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시정조치

☞ 도급받은 작업과 관련된 법 위반 사항에 대해 관계수급인에게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 **(시정조치 대상)** 관계수급인(관계수급인 근로자는 대상이 아님)
- 관계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받은 작업과 관련하여 법을 위반할 경우 시정하도록 관계수급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 폭발·질식 등 위험이 있는 다음의 작업 중 하나를 사내·외 도급하는 경우, 도급받은 작업과 관련하여 수급인 또는 수급인 근로자가 법을 위반할 경우 수급인에게 시정하도록 수급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 폭발성·발화성·인화성·독성 등 유해성·위험성이 있는 화학물질 또는 그 화학물질을 함유한 혼합물을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반응기·증류탑·배관 또는 저장탱크로서 고용부력으로 정하는 설비를 개조·분해·해체 또는 철거하는 작업, 그 설비의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 산소결핍, 유해가스 등으로 인한 질식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 토사·구축물·인공구조물 등의 붕괴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도급인의 관계수급인에 대한 시정조치)
 - ☞ 위반에 대한 조치
 - 도급인의 조치에 따르지 않는 자,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12. 도급인 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 위반시 처벌강화

☞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 위반시 제재 및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시 처벌 강화

-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 위반시 제재를 강화하여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안전 및 보건조치 위반으로 근로자 사망시 도급인에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되,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동일한 죄를 범한 경우 그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및 200시간 범위에서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병과 가능

✓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벌칙), 제169조(벌칙), 제174조(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3 건설업 산업재해예방 책임 강화

13. 건설공사 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획·설계 등 단계별로 안전보건상의 조치의무를 하여야 함

- **(대상)** 총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공사
- **각 단계별 조치사항**
 - **(계획)** 건설공사 시 중점 유해·위험과 이를 감소시키기 위한 내용의 「기본안전보건대장」 작성
 - **(설계)**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설계자에게 제공하여 유해·위험요인의 감소대책이 포함된 설계 도면, 공사시방서 등의 설계도서(설계안전보건대장)를 설계자에게 작성토록 하고 설계자의 최종 설계도서 납품시 확인
 - **(시공)** 설계안전보건대장을 건설공사 수급인에게 제공, 이를 반영한 안전작업 계획을 담은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토록 하고 이행여부 확인
- **각 대장별 포함사항**
 - **(기본안전보건대장)** ▲ 공사규모, 공사예산 및 공사기간 등 사업개요 ▲ 공사현장 제반 정보 ▲ 공사시 유해·위험요인과 감소대책 수립을 위한 설계조건
 - **(설계안전보건대장)** ▲ 적정 공사기간 및 공사금액 산출서 ▲ 설계조건이 반영된 공사중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유해·위험요인 및 감소대책에 대한 위험성평가 내용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계획 ▲ 안전보건조정자 배치계획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출내역서 ▲ 건설공사의 산업재해예방지도 실시계획
 - **(공사안전보건대장)** ▲ 위험성평가 내용이 반영된 공사 중 안전보건 조치 이행계획 ▲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심사 및 확인결과에 대한 조치내용 ▲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계획 및 사용내역 ▲ 건설공사의 산업재해예방 지도 계약여부, 지도 결과 및 조치내용

✓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5조(산업재해 예방조치 대상 건설공사)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6조(기본안전보건대장 등)
 - ☞ 위반에 대한 조치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14. 안전보건조정자

☞ 2개 이상의 건설공사를 도급한 발주자는 그 2개 이상의 건설공사가 같은 장소에서 행해지는 경우 해당 공사에 따른 작업의 혼재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현장에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어 안전보건 조치 등의 조정업무를 수행토록 하여야 함

- **(대상)** 총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 **(업무내용)**
 -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각각의 공사 간에 혼재된 작업의 파악
 - 혼재된 작업으로 인한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성 파악
 - 혼재된 작업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작업의 시기·내용 및 안전보건 조치 등의 조정
 - 각각의 공사 도급인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간 작업 내용에 관한 정보 공유 여부의 확인
- **(선임방법)** 발주자는 분리하여 발주되는 공사의 착공일 전날까지 안전보건조정자를 지정 하거나 선임하여 각각의 공사 도급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함
 - 안전보건조정자는 공사감독자 또는 책임감리자 중에서 지정하거나,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건설안전기술사 등의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선임

✓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안전보건조정자)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6조(안전보건조정자의 선임 등), 제57조(안전보건조정자의 업무)
 - ☞ 위반에 대한 조치
 -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15. 공사기간 단축 및 위험공법 사용·변경 금지

☞ 발주자 또는 도급인은 수급인이 무리하게 공사진행을 하지 않도록 적절히 관리

- 발주자 및 도급인은 수급인이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수행을 할 수 있도록
 - 설계도서 등에 따라 산정된 공사기간을 단축해서는 아니 되며,
 - 공사비를 줄이기 위하여 위험성이 있는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공법을 변경해서는 아니 됨

✓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69조(공사기간 단축 및 공법변경 금지)
 - ☞ 위반에 대한 조치
 - 1천만원 이하의 벌금

16. 건설공사 기간의 연장

☞ 불가항력의 사유로 건설공사가 지연되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공사기간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도급인은 공사기간을 연장하여야 함

- (대상)
 - 태풍·홍수 등 악천후, 전쟁·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그 밖에 계약 당사자가 통제할 수 없는 사태의 발생 등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경우

- 건설공사발주자의 귀책사유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된 경우
- **(요청방법)** 도급인(수급인)은 연장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10일이 되는 날까지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발주자(도급인)에게 제출
 - ① 연장요청서
 - ② 연장요청 사유 및 그에 따른 공사 지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③ 연장요청기간 산정근거 및 공사지연에 따른 공정관리 변경 서류
- 수급인은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연장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계약 만료 전 도급인에게 연장을 요청할 예정임을 통지하고 연장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10일이 되는 날까지 연장 요청하여야 함
- 도급인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사기간 연장조치를 하거나 1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그 기간 연장 요청을 하여야 함
- 발주자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사기간 연장조치를 하거나, 불승인 사유와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도급인에게 통보하여야 함
- 도급인은 발주자로부터 연장조치에 대한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수급인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함

✓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70조(건설공사 기간의 연장)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7조(공사기간 연장 요청 등)
 - ☞ 위반에 대한 조치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17. 설계변경의 요청

- ☞ 관계수급인은 가설구조물의 붕괴 등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토목·건축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도급인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도급인은 기술적으로 적용이 불가능한 명백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반영하여야 함

- **(대상)** 다음의 가설구조물의 붕괴 등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높이 31미터 이상인 비계
 -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높이 6미터 이상인 거푸집 동바리
 - 터널의 지보공 또는 높이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
- **(요청방법)**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급인에게 제출
 - ① 건설공사 설계변경 요청서
 - ② 설계변경 요청 대상 공사의 도면
 - ③ 당초 설계의 문제점 및 변경요청 이유서
 - ④ 가설구조물의 구조계산서 등 당초 설계의 안전성에 관한 전문가의 검토 의견서 및 그 전문가(전문가가 공단인 경우는 제외한다)의 자격증 사본
 - ⑤ 그 밖에 재해발생의 위험이 높아 설계변경이 필요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도급인은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설계변경을 한 후 건설공사 설계변경 승인 통지서를 관계수급인에게 통보하거나 1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설계변경 요청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발주자는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설계를 변경한 후 설계변경 승인 통지서를 도급인에게 통보해야 함. 다만, 불승인할 경우 건설공사 설계변경 불승인 통지서에 설계를 변경할 수 없는 사유를 작성하여 도급인에게 통보하여야 함
 - 도급인은 발주자로부터 통지서를 통보받은 날부터 5일 이내 수급인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함

✓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설계변경의 요청)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8조(설계변경 요청 대상 및 전문가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8조(설계변경의 요청 방법 등)
 - ☞ 위반에 대한 조치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18.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설공사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 안전보건관리비를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하여야 함

- 도급인은 해당 건설공사를 위하여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관계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에 사용하고, 그 사용 명세서를 매월 작성하고 건설공사 종료 후 1년간 보존해야 함
- 도급인 또는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산업재해예방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됨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 **적용범위**
 - 총 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인 공사
- **계상기준**
 - 대상액 5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보건관리자 선임대상 건설공사 : 대상액×비율
 - 대상액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 대상액×비율+기초액
 - 대상액이 구분되지 않은 경우 : 총공사금액의 70%를 대상액으로 산정·계상
 - ※ 대상액 : 직접재료비+간접재료비+직접노무비
 - 단,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거나 물품이 완제품의 형태로 제작 또는 납품되어 설치되는 경우에는 재료비 또는 완제품의 가액을 포함시키지 않은 대상액을 기준으로 계상한 안전보건관리비의 1.2배를 초과할 수 없음
- **공사종류 및 규모별 안전관리비 계상기준표**

공사종류 \ 대 상 액	5억원 미만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보건관리자 선임대상
		비율(X)	기초액(C)		
일반건설공사(갑)	2.93%	1.86%	5,349,000원	1.97%	2.15%
일반건설공사(을)	3.09%	1.99%	5,499,000원	2.10%	2.29%
중 건 설 공 사	3.43%	2.35%	5,400,000원	2.44%	2.66%
철도·궤도신설공사	2.45%	1.57%	4,411,000원	1.66%	1.81%
특수및기타건설공사	1.85%	1.20%	3,250,000원	1.27%	1.38%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부족계상, 목적외 사용, 사용내역 미작성 등 위반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목적외 사용금액이 1,000만원 이상 또는 사용내역 작성의무, 보존의무 위반시 PQ(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신인도 평가에서 감점(건당 -0.5점, 최대 -1점)

✓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9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 ☞ 위반에 대한 조치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19. 기계·기구 등에 대한 건설공사도급인의 안전조치

☞ 사업장 내에서 타워크레인 등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설치·작동하는 있는 경우 또는 이를 설치·해체·조립 하는 등의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 유해·위험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함

● (대상)

- ▲ 타워크레인 ▲ 건설용 리프트 ▲ 항타기/항발기가 설치·작동하고 있는 경우
- 이를 설치·해체·조립 하는 등의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

● (수행사항)

- 작업시작 전 기계·기구 등을 소유 또는 대여하는 자와 합동으로 안전점검 실시
- 작업을 수행하는 사업주의 작업계획서 작성 및 이행여부 확인
 - ※ 타워크레인 및 항타기/항발기에 한함
- 작업자가 적절한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확인
- 그 밖에 해당 기계·기구 또는 설비 등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 기계·기구 등의 결함, 작업방법과 절차 미준수, 강풍 등 이상 환경으로 인하여 작업수행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작업중지 조치

✓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76조(기계·기구 등에 대한 건설공사도급인의 안전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6조(기계·기구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4조(기계·기구 등에 대한 안전조치 등)
 - ☞ 위반에 대한 조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III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체계구축

- | | |
|-------------------------|----|
| 1.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구성요소(기본) | 43 |
| 2. 건설업 발주자의 안전보건관리 | 48 |
| 3. 공공기관 「안전근로협의회」 운영 | 63 |

Ⅲ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체계구축

1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구성요소(기본)

- 도급사업 수행 시 수급인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서는 수급업체의 협력을 이끌어내고, 사업장의 위험요소를 체계적으로 도출하여 개선하여야 함
-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다양한 안전보건활동을 유기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함이 바람직함

[도급사업 안전보건활동 구성요소]

도급업체-수급업체 간 안전보건체계 구축 및 운영

- 안전보건시스템 구축 및 운영
- 안전보건 관련법규 준수
- 도급작업장의 안전보건활동
- 적격 수급업체 선정 평가 및 육성



협업체 구성 및 운영	위험성평가	안전보건 점검
- 상호 연락방법 및 작업공정 조정 - 재해발생 위험시 대피방법 등 협의	정기 및 수시 위험성평가	- 1회/2일 또는 1회/7일 이상 작업장 순회점검 - 1회/2개월 또는 분기 이상 합동안전보건 점검

유해인자 및 화학물질 관리	안전보건교육	위험장소 예방조치
- 작업환경 측정·개선 - 안전보건 정보 제공	- 교육장소 및 자료 제공 - 법정교육 지도·지원 - 사업장 특성별 교육	- 감전, 추락 등이 우려되는 위험장소에 대한 예방조치 - 공사기간 단축/위험공법 사용금지

1. 안전보건시스템 구축 및 운영

① 안전보건 방침 명확화

- 최고경영자의 안전철학, 의지 등을 반영한 안전보건방침 수립·게시
- 각 수급인 사업장을 포함한 구성원 모두가 인식토록 지속적으로 주지시키고 회사에 적합한지를 정기적으로 검토

② 안전보건 목표 및 활동계획 수립

- 위험의 특성, 규모, 전년도 수준 등을 고려하여 안전보건 목표 설정
 - 목표는 구체적이고 달성 가능한 것으로 설정하여 전 구성원에 공표
 - 사업장 전체 목표, 부서별 세부 목표, 이를 추진하는 책임자 지정
 - 안전보건 목표 달성을 위한 안전보건활동계획 수립·실행
 - 해당업무(작업), 단위별(팀별, 부·과별)로 수립
 - 수단·방법·일정·예산·인원 등이 포함된 세부계획을 수립
- ※ 안전시설개선, 교육훈련, 보호구 구입, 건강검진, 작업환경측정 등 안전보건활동에 필요한 예산을 추진항목별로 반영

③ 안전보건활동을 위한 구성원의 직무·책임·권한 설정

- 도급사업의 구성원(수급인 사업장 포함)에 대한 안전보건에 관한 직무 및 업무분장(역할·책임·권한 등) 명확화
- 유해·위험작업에 관련된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진 자로 함

④ 안전보건활동 모니터링

- 안전보건 목표의 달성여부 및 활동계획의 이행여부를 주기적으로 측정
- 안전보건 관련법규, 절차서 등의 준수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
- 모니터링 시 부적합 사항에 대한 원인파악과 시정조치 절차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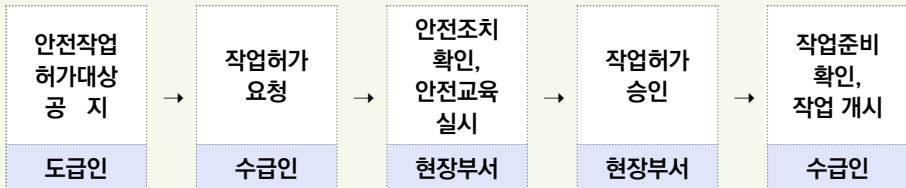
⑤ 체계적인 안전보건교육 및 훈련

- 조직의 계층, 위험요인, 업무 또는 작업특성을 고려한 교육훈련계획 수립
- 모든 근로자에게 위험성평가 사항을 포함한 안전보건 제반 정보 전달
- 안전보건에 영향을 미치는 자는 교육, 훈련, 경험 등을 통해 업무수행에 필요한 적절한 능력을 보유·유지
-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비상시 대응절차 교육 실시, 습득을 위해 주기적 훈련 실시

⑥ 안전작업허가제 운영

-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과 허가절차를 수립하여 운영
 - 유해·위험 작업 개시 전에 안전보건조치 이행이 포함된 작업허가를 받도록 관리
-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확인자 등 역할과 책임 부여
 - 작업 전 현장부서는 위험요인과 안전보건조치 이행 사항을 확인

[안전작업허가서 발급 절차(예시)]



※ 안전담당부서는 현장 안전조치 이행여부 점검 및 안전관리

[안전작업허가서 발급 대상 유해·위험작업(예시)]

- 유해·위험물질이 들어있거나 들어있었던 용기, 펌프 또는 배관 등과 같은 기기의 개방 또는 분해 시
- 인화성물질 주변 용접·절단 또는 불티 등이 발생하는 화기작업 시
- 밀폐공간 출입 시
- 위험지역 내에서의 내연기관 운전 시
- 굴착작업 시
- 전기작업 시
- 고소작업 시
- 중장비 사용작업 시
- 방사능 사용작업 시 등

2. 도급작업장의 안전보건활동

① 도급작업 전 위험성평가 실시

- 모든 근로자(협력업체, 공사업체, 방문객 포함)에게 안전보건상 영향을 주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위험성평가 실시
 - 작업장에 제공되는 유해·위험시설 및 유해·위험물질
 - 일상작업 및 수리·정비 등 비일상적인 작업, 비상조치작업
 - 교대작업, 야간작업, 장시간 근로 등에 대한 건강증진방안
 - 일시 고용, 외국인, 고령자 등 취약계층 근로자의 안전보건
- 작업의 위험성을 사전에 인지하도록 위험성평가 결과를 수급인에게 제공
 - 수급업체에서 도급인으로 제공받은 위험성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수시 위험성평가를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

② 도급작업 전에 안전보건 정보를 수급인에게 제공

- 유해·위험물질의 명칭과 유해성·위험성, 안전보건상의 주의사항 및 유출 등 사고 발생 시 필요한 조치의 내용
- 위험작업의 시기 협의 조정

- 안전보건에 관한 제반 준수사항 및 안전작업을 위한 필요한 절차 협의

③ 도급업체 보유 위험기계기구 및 설비의 안전성능 확보

- 위험기계기구 및 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 및 업무절차 수립 운영
- 법정검사 실시 및 방호조치 실시
- 위험기계기구 및 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내역 제공

④ 작업 시작전 안전점검 및 조치

- 도급작업 공정별로 작업 전·중·후 안전점검 실시
 - 화재·폭발, 질식, 붕괴 등 대형사고 예방 필수항목의 누락되지 않도록 점검
 - 안전점검으로 지적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조치 이행
 - 안전조치 완료 전 작업중지 등의 관리방안 구비

⑤ 안전점검에 따른 개선조치 이행 확인

- 작업 재개시 전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 안전조치 이행자와 완료 확인자가 별도 조직(부서)으로 구성되고, 완료 확인결과에 따라 작업개시 승인자는 경영자 또는 경영자대리인등 책임자급으로 하여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함
- 개선사항에 대한 위험성평가 실시와 그 결과를 관련 작업자에게 주지

⑥ 신호체계 및 연락체계

-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 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신호체계가 필요한 유해위험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
- 수리·정비 작업 시 Lock-out/Tag-out 운영
- 도급인과 수급인 또는 수급업체 상호간 이해관계자가 안전보건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연락체계 구비

- 유·무선연락망, FAX, 온라인시스템 등의 소통 채널 운영
- 사고발생위험이 높은 작업이 혼재될 경우 안전회의를 수시 개최, 작업공정 간 위험에 대한 소통 및 위험작업의 시기조정

⑦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운영

- 도급작업에서 발생될 가능성이 있는 화재폭발, 질식 등의 안전사고 또는 천재지변 등의 피해유형별 비상대응계획 수립
- 조직 구성원의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예방조치 및 사후조치 포함
-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별로 필요한 주기에 따라 훈련 실시
- 훈련종료 후 성과 평가와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응절차 재검토
- 유관기관(고용노동부, 소방서 등)과 전문의료기관의 연락체계 포함

⑧ 도급·수급업체 작업자 현황관리 및 출입통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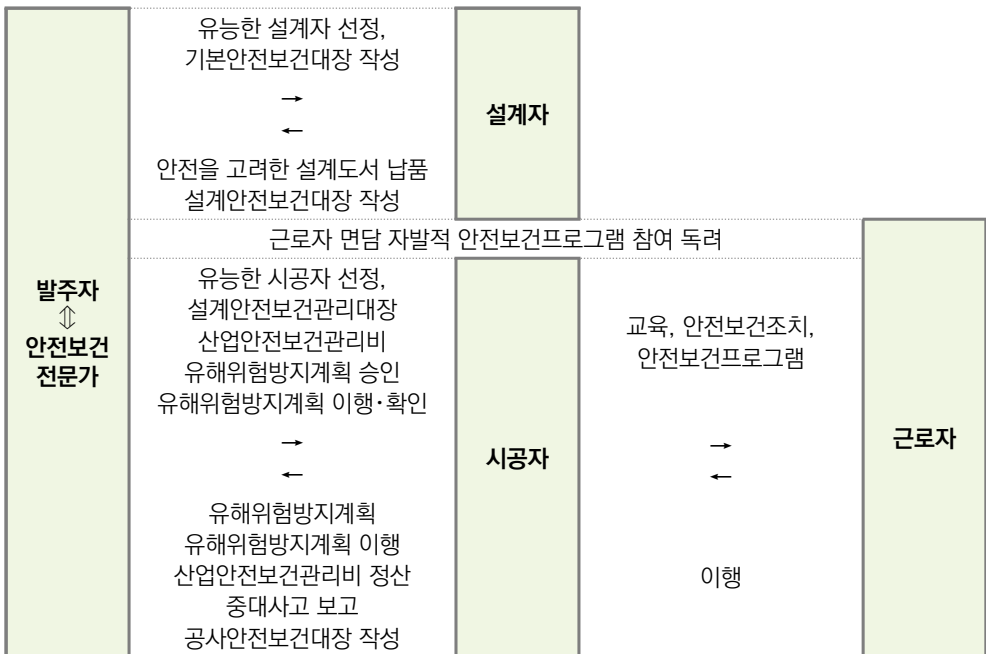
- 도급작업장의 수급업체 작업자에 대한 출입관리 절차서 구비
- 도급작업장의 출입허가 및 출입통제 장소 구획
- 안전통로 등 이동경로 준수여부, 필요한 보호구 착용여부 확인
- 외부인 출입시 위험요인 및 준수사항 안내, 출입허가 필요한 작업구역 설정 및 대여 보호구 구비

2 건설업 발주자의 안전보건관리

1. 발주자의 안전보건활동 체계 구축

- 발주자 주도의 선제적 예방관리 체계
- 사업계획 단계, 설계 단계, 공사 단계 참여자들의 주체별 책임과 역할을 발주자가 선도하여 명확히 하여야 함

- 사업계획 및 설계단계부터 근로자의 안전이 고려되도록 유해위험요인을 발굴하고 위험성 평가 평가를 통한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설계에 반영토록 발주자가 확인·관리하여야 함
- 시공자로 하여금 유해위험방지계획서(해당시)을 작성토록 하고 발주자는 유해위험방지 계획이 현장에서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함
- 발주자는 안전보건 분야에 역량을 갖춘 설계자와 시공자를 선정하고, 합리적인 수준의 적정 자원(공사금액 등)과 공사 기간을 보장하여 건설공사 참여자들이 발주자 주도의 안전보건 관리체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여야 함
- 발주자 주도의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핵심은 발주자의 관심과 안전보건관리 역량이므로, 발주자는 안전보건관리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안전보건 전담조직 또는 전문가가 없는 발주자(기관)는 외부 건설분야 안전보건전문가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여야 함



2. 공사단계별 발주자의 주요 업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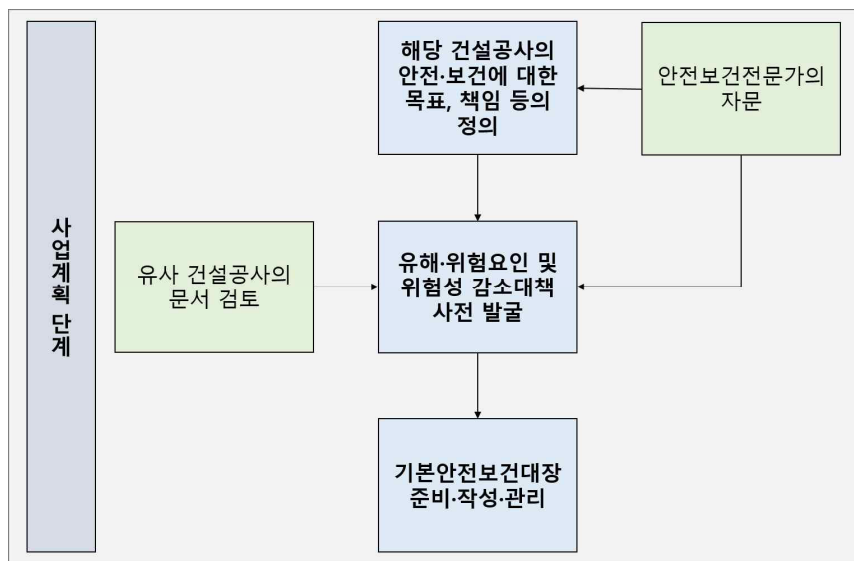
● 사업전반

- 발주자는 사업 전 단계에 대하여 건설공사 참여자인 설계자, 시공자가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제대로 이행하도록 총괄하여야 하며, 유해·위험요인을 관리할 기본·설계·공사 안전보건 대장을 관리하여야 함
- 발주자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절한 공기와 자원 등을 건설공사 참여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시공자의 안전·보건활동이 효과적으로 실행하도록 지원하여야 함
- 발주자는 건설공사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건설분야 안전보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효과적이며, 사업계획 단계, 설계 단계와 공사(시공) 단계에서 건설분야 안전보건전문가를 고용하거나 또는 전문가의 자문 등을 받아 발주자 안전보건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 사업계획 단계

- 발주자는 해당 건설공사의 안전·보건에 대한 목표, 역할과 책임을 결정하고 중점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유해·위험요인 및 위험성 감소대책을 사전에 발굴하여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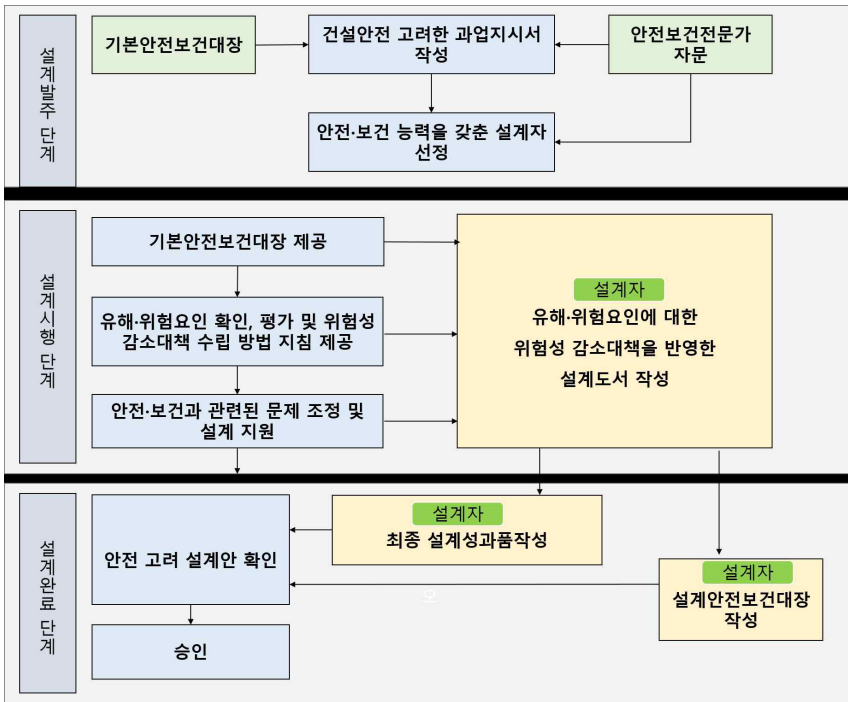
[사업계획 단계의 발주자 안전보건관리 업무]



● 설계 단계

- 발주자는 설계 발주단계에서 건설안전을 고려한 설계가 될 수 있도록 해당 건설공사의 유해·위험요인 및 위험성 감소대책을 바탕으로 과업지시서의 설계조건을 작성하고, 설계자의 안전·보건 역량을 평가하는 절차를 통해 능력을 갖춘 설계자를 선정하여야 함.(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함)
 - 발주자는 설계자에게 기본안전보건대장, 건설공사의 유해·위험요인 확인, 평가 및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방법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고 안전·보건과 관련된 문제를 조정하여 근로자의 안전·보건의 반영된 설계안이 수립되도록 지원하여야 함.
- 또한, 설계자가 유해·위험요인 대한 위험성 감소대책을 담은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여야 함.
- 발주자는 최종 설계 성과품이 안전을 고려한 설계안으로 작성되었는지 확인하고 승인하여야 하며, 설계안전보건대장을 확인하여야 함.

[설계 단계의 발주자 안전보건관리 업무]



● 공사발주 단계

- 발주자는 설계 단계에서 발굴한 해당 건설공사의 유해·위험요인 및 위험성 감소대책과 해당 건설공사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안전·보건요구사항과 기대 안전성과를 입찰내용(입찰 설명서)에 반영하여야 함.
- 발주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고, 평가 절차를 통해 능력을 갖춘 시공자를 선정하여야 함.

● 공사착공 단계

- 발주자는 해당 건설공사의 기본 및 설계안전보건대장,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는 안전·보건 지침을 시공자에게 제공하고, 시공자가 유해·위험방지계획(유해·위험방지계획서 등과 같은 문서)을 수립하도록 하여야 함.
- 발주자는 시공자가 작성한 유해·위험방지계획을 검토하고 시공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 하여야 하며, 필요시 수정·보완하도록 하여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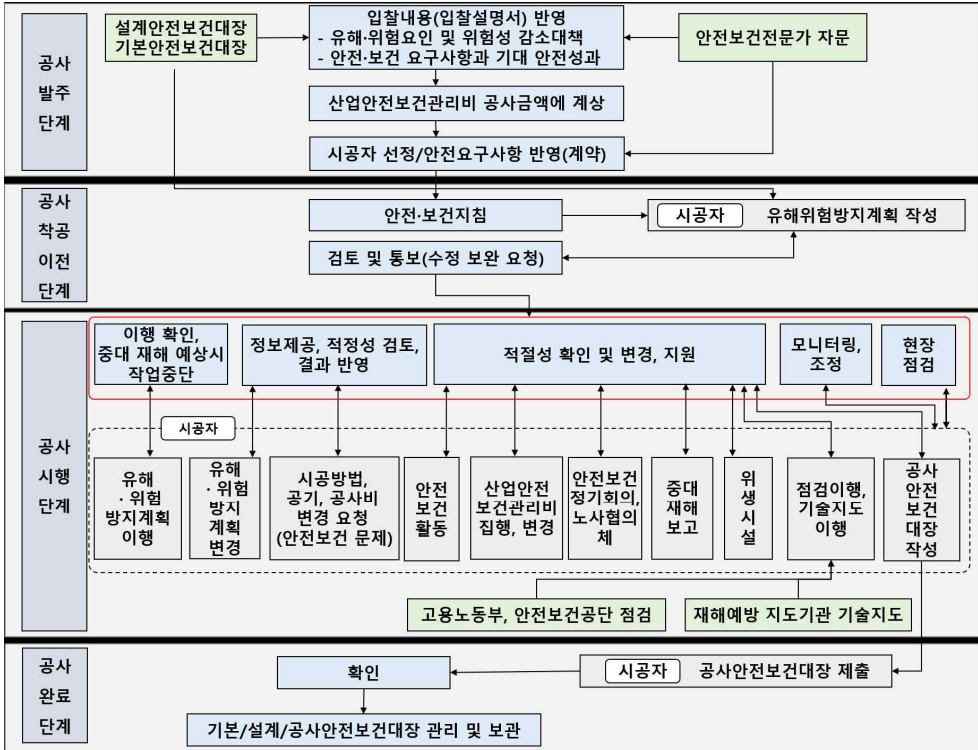
● 공사시행 단계

- 발주자는 시공자가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도록 하여야 함.
- 발주자는 다음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함.
 - 시공자의 유해·위험방지계획을 이행
 - 현장의 안전보건활동의 적절성
 - 안전·보건과 관련된 정기회의(노사협의체 등)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실적
 - 위생시설의 설치
 - 점검 및 기술지도 이행결과
- 발주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을 경우, 작업을 중단시켜야 함.
- 발주자는 시공 방법의 변경 등과 같이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 충분한 안전보건 정보를 제공하고 공기, 공사금액 연장, 추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해 검토하여 필요시 반영하여야 함.
- 발주자는 공사 단계를 관리 및 모니터링 하여야 하며, 안전·보건에 대한 위험 없이 공사가 수행되도록 관련된 문제를 조정하여야 함.

● 공사완료 단계

- 발주자는 공사안전보건대장을 확인하고, 현장의 안전보건대장(기본, 설계, 공사)을 취합하여 보관하여야 함.

[공사 단계의 발주자 안전보건관리 업무]



사례 | ○○시 발주자 안전보건관리 사례

□ 도입 배경

2013년 7월 연이어 발생한 안전사고(노량진 배수지 사고, 방화대교 접속도로 사고)를 계기로 건설분야 전반에 걸친 잘못된 관행·제도·문화를 근본적으로 개선

1) 노량진 배수지 사고 원인

- 도달기지가 범람되는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터널 입구부의 차수판이 기능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작업자 대피 등 안전조치 미 이행
- 침수방지용 차수판 설치시 수위조건·구조계산서 등 기술검토 없이 시공계획서 승인 및 실제 시공계획서와 다르게 부설시공
- 허용오차를 벗어난 터널 시공오차가 발생하여 공사계획 변경이 불가피함에도 발주청 보고 등 감리의 적의조치 미흡
- 터널측량을 무자격자 시행하였고, 터널 구간 중 측량작업에 참여하지 않았는데도 참여한 것처럼 서류 제출

2) 방화대교 접속도로 사고원인

- 교량 내외 측에 작용하는 하중이 지나치게 큰 편차를 가지도록 설계
- 시공 전에 시행하는 구조계산서 및 설계도면 검토과정에서 시공단계별 안전성 미 검토
- 설계와 달리 방호벽 설치장비와 백호 등 중장비를 교량위에 추가 사용했음에도 이에 대한 검토가 없었음
- 실제 시공된 교량은 콘크리트 슬래브가 설계보다 교량외측으로 40mm정도 밀려서 설치되었고, 방호벽 단면도 설계보다 30% 정도 큰 것으로 분석, 이는 교량의 외측을 누르는 힘이 시공단계에서 설계보다 훨씬 증가

□ 발주자 주도 안전보건관리 개선방안

○○시의 발주자 안전관리제도의 특징은 설계자 또는 시공회사와 계약관계에 있는 발주기관도 계획-설계-시공단계 뿐만 아니라 건설현장의 근로환경과 안전사고 재발방지 기반을 조성하는 전 단계에 걸친 안전관리프로그램을 구축하여 관련 부서들과 상호 협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건설공사의 최상위 의사결정자인 발주자는 설계자, 시공자(하도급업체 포함) 건설사업 관리기술자(감리자)등이 서로 협력하는 안전관리프로그램을 실시하였으며, ○○시의 안전관리의 범위도 시공단계에 국한되지 않고, 설계-계약-시공단계 전반으로 확장하였음

[○○시의 안전보건관리 프로그램]



발주자 주도 안전·보건관리를 통해 건설사고 재발방지를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시에서 실시한 안전·보건관리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1) 설계분야 : 설계 내실화를 위해 충분한 설계기간 부여

- ① 설계착수·중간·최종보고 등 설계시 시공전문가 참여 및 적정 공사기간 산정
- ② 설계 시 유사설계에 대한 사고사례조사 및 안전대책 수립 의무화

〈 설계심의 의무화 및 내실화 〉

- ① 100억 이상 공사 또는 기술상 주요공사는 기본 및 실시설계와 주요 공종 변경시 기술심사 담당관실의 건설기술심의 의무화
- ② 건설심의위원회에 산업안전전문가 위촉 및 심의단계별 위원명단, 심의결과 공개

〈 시공 경험이 적은 구조물에 대한 설계 감리 강화 〉

- ① 설계·시공경험이 적은 구조물 및 공법 설계 반영시 국내외 적용 사례를 통해 사고사례 조사 및 사고위험 사전조사 강화
- ② 건기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시특법상 1·2종 시설물 및 신공법·특수공법 적용시 설계 감리 시행토록하고, 필요시 경험 있는 해외전문가 자문
- ③ 그 외 디자인측면이 강조되어 설계·시공 경험이 적은 구조물의 기본 및 실시설계에 대해서도 필요시 설계 감리 시행

〈 전도 우려 구조물 설계 검토 강화 〉

- ① 설계기준 보완 이전이라도 교량 램프 등 곡선교의 전도가능성에 대해서는 안전측으로 충분히 여유를 두고 설계
- ② 기 설계·시공 중인 곡선교에 대해 면밀한 검토 추가 시행

2) 계약분야

〈 계약 시 안전관리비 적정 확보 〉

- ① 산업안전관리비와 별도로 안전관리비 계상토록 조달청 협의
- ② 계약심사시 안전관리비 반영여부 검토·확인 강화
- ③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낙찰률에 관계없이 예정 가격대로 지급(입찰공고문에 명시)

〈 안전관리비 공사초기 집행 강화 〉

- ① 사업초기 안전관리비의 집행기준 강화
- ② 공정률 50%미만시도 30%이상 사용토록 관련 규정 개정

〈 부실공사 우려현장 상시 모니터링 강화 〉

- ① 업체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부도발생 등 실태조사 강화
- ② 부실공사 우려 현장 관리 및 하도급대금 직불 강화

〈 장기계속 계약의 경영상태 평가 도입 〉

- ① 장기계속 계약의 연도별 차수 계약 시 경영 상태를 평가하여 신용등급 최저수준(CCC+) 이하인 경우 계속계약 해지 여부 검토
- ② 경영상태가 CCC+이하인 경우에는 이전 연도 공사 진행률, 향후 시공가능 여부, 경영상태 향상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 공사손해보험 가입방식 개선 〉

- ① 시공사의 공사장별 보험가입을 ○○시가 공사장을 통합하여 보험가입

〈 안전관리 부실업체 입찰참가 제한 〉

- ① 안전사고 및 부실시공에 대한 평가기준 강화 및 모든 공사로 확대
- ② 부실공사에 따른 부실 벌점, 안전관리비 사용의무 위반 등에 대해서 감점 실시
- ③ 안전사고 발생한 하도급업체 신규공사 입찰참가 제한 및 ○○시 공사 참여 제한

3) 시공분야

〈 안전관리계획 검토·확인, 승인절차 강화 〉

- ① 감리단 검토 및 발주청 심사 강화
- ② 하도급업체의 안전관리계획 수립 의무화
- ③ 감리단의 현장 이행실태 점검 강화

〈 설계 설명회(Kick-off Meeting)의무화 〉

- ① 참여범위 : 발주청, 설계·시공(하도급체 포함)·감리(기술지원감리 포함), 전문가 등
- ② 진행방법 : 설계·시공 상의 주의점 설명 및 질의응답, 대책 마련

③ 진행시기 : 공사 착수 전, 주요 공정 시공계획 수립시

④ 시행주체 : 시공사

〈 시공단계별 안전성 검토 강화 〉

- ① 시공계획서 및 시공 상세도(가시설 포함)작성 규정대로 엄격 시행
- ② 시공사가 시공계획서 작성 시 설계사를 참여시켜 현장여건에 적합하게 작성하여 책임감리원 승인을 받아 시행
- ③ 시공계획서·시공 상세도 감리단 승인 없이 시공하는 사례 근절토록 감리단 지도 강화
- ④ 공사 관리관(담당공무원)이 모든 현장에 대해 시공계획서·시공 상세도 작성 여부 확인 시행
- ⑤ 시공계획서에 수해예방·재난대책 별도 항목으로 검토 강화토록 개선

〈 불법하도급과 품떼기 근절 〉

- ① 시공계획서 및 시공 상세도 등에 근거 품질·안전관리 강화
- ② 다단계 불법하도급 및 품떼기 신고 시 보상 시행

〈 안전조회(ToolBox Meeting)시 5RP제도 시행 〉

- ① 당일 공사에 대한 위험요소 공유를 위한 5RP(5risk points)제도 시행
- ② 감리원은 원도급사 주관 안전조회에 참여하여 위험요인 발굴 및 전파 등 적정여부를 확인 하고 부적정시 보완 조치
- ③ 안전 위험요인을 누구든지 확인할 수 있도록 현장에 부착

〈 무자격 기술자 퇴출 등 엄중조치 〉

- ① 감리단의 현장기술자 자격요건 수시 확인, 허위사실 발견시 엄중 처벌
- ② 발주청은 허위근무자 발견시 영업정지 등 엄중 처벌

〈 신속하고 다양한 재난상황 전파시스템 개선 〉

- ① 재난 메시지 모바일 상황전파 시스템 개선
- ② 지하 등 특수현장에 대해서는 지상과의 비상통신체계 구축

〈 건설공사 선금 하도급업체 지급확인 이행 〉

- ① 선금지급 15일 이내 하도급사에 선금 수령여부 확인
- ② 선금 미지급 확인시 즉시 벌칙 부과 및 보험증권의 선금 회수 후 직불 병행
- ③ 하도급사 선금지급 여부 점검기능 강화

〈 현장점검 내실화 〉

- ① 과다·중복점검 방지를 위해 기관별 합동으로 집중점검
- ② 주요 현장에 대해 전문가의 사전 도서검토 및 2~3일에 걸친 집중 점검 시행
- ③ 전문가 합동점검시 명예근로환경안전지킴이, 감사실 직원 포함 실시
- ④ 시 및 본부 간부 불시 현장점검 병행
- ⑤ 점검결과 DB 구축

〈 감리단 시공오차 검측결과와의 적정성 수시 확인 〉

- ① 감리원의 검측 결과를 발주청 공사 관리관이 수시(주기적)확인
- ② 시공 오차 발생 확인시 구조 안전 등 정밀 검토하여 재시공 조치

4) 감리분야

〈 공사 특성에 적합한 감리원의 적정 배치 〉

- ① 주요 공정 특성에 맞는 전문기술사 등 감리원 적정 증원 배치
- ② 감리 행정서류 및 불필요한 행정업무 간소화

〈 기술지원감리원 운영 개선 〉

- ① 기술지원 감리원의 필수업무 지정 등 운영 개선으로 역할 강화
- ② 책임감리원이 요청하지 않더라도 「주요 구조물 및 가시설의 시공계획서·시공 상세도면 검토」를 의무화
- ③ 분야별 기술지원감리원을 주요 현장의 주치의로 활용하여 공사 전 과정 참여

- ④ 외국과 같이 업무실적에 따른 실 근무시간으로 비용정산 처리
- ⑤ 기술지원감리원의 담당가능 공사현장 수를 대폭 축소(10개 → 5개)

〈부실은폐 감리원 엄중 처벌〉

- ① 부실시공·안전사고는 원칙적으로 시공사 책임으로 시공자위주 처벌 확행
- ② 부실시공·안전사고 은폐 발견시 계약 해지 등 엄중 처벌
- ③ 감리단이 시공사와 결탁하여 은폐한 부실시공 등 발견시 가중 처벌
- ④ 부실시공 및 위험요소를 감리에서 발견 및 적정 조치시 포상 등 인센티브 부여

〈책임감리원의 공사 중지권 시행 보장〉

- ① 안전사고 우려시 책임감리원의 「공사 중지명령 조치」 확행
- ② 공사 중지명령시 귀책소재가 시공사일 경우는 지체상금 부과 및 해당일수 만큼 공기연장, 감리원에게는 공기지연에 대한 책임 면제
- ③ 공기지연의 귀책소재가 자연현상, 발주처 사유 등에 해당될 때는 지체상금 부과 없이 공기 연장 확행

5) 근로환경분야

〈위험·유해요인 신고 전담 창구 운영〉

- ① 신고 및 처리를 위한 전담창구 운영
- ② 근로자 교육을 통해 창구개설, 신고 및 처리 방법 등에 대해 안내
- ③ 신고자에 대해서는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신분보장 등 처리

〈주기적 안전교육 및 맞춤형 매뉴얼 작성 보급〉

- ① ○○시 공사현장 특성에 맞는 안전교육 실시 및 이수사항 관리
- ② 영세 소규모 사업장 대상 맞춤형 매뉴얼 작성·보급

〈 공사장 휴게실 설치 의무화 및 환경정돈 〉

- ① 근로자 휴게 공간 설치 법제화 법률개정 건의
- ② 후생시설 설치에 따른 비용 설계내역 반영
- ③ 무질서한 작업도구, 자재 등 정리정돈 강화하여 안전사고 예방

〈 산업현장 방문 근로환경개선 컨설팅 실시 〉

- ① 산업현장방문 「근로환경개선컨설팅단」 구성·운영
- ② 산업안전보건 전문 공인노무사, 산업안전기술사, 산업안전보건 관련 전문가 20명 내외 (3~4명 내외의 5팀 구성)
- ③ ○○시 발주(투자·출연기관 포함)공사장 근로환경 점검 및 컨설팅

6) 시민참여분야

〈 명예근로환경 안전지킴이 제도 운영 〉

- ① 관련전문가 및 단체, 근로자 등 20명 내외로 인력풀 구성
- ② ○○시 발주(투자출연기관 포함)공사장 근로환경 및 산업재해예방 관련 모니터링
- ③ 중점점검 공사장 선정 후, 월 3~4회 안전교육 실시, 공사장 정돈 등 주기적인 모니터링 실시 후 통보 개선 조치

7) 내부역량 강화 및 선진건설 기반 확충

〈 건설관계자 이력제 및 평가시스템 DB 구축 〉

- ① 건설관계자 수행실적 평가시스템 구축
- ② 안전사고 사례 및 현장점검 결과 기록·관리시스템 구축

〈 모든 설계·감리 공개경쟁입찰 시행 〉

- ① 설계 입찰 등 계약 및 공사 전 과정에서 퇴직공무원의 영향력을 없앨 수 있는 공정한 절차 확행
- ② 설계 변경에 따른 보완설계 등 모든 설계용역은 공개경쟁입찰 의무화

8) 하도급 개선분야

〈 직접시공 의무비율 및 대상공사 상향 〉

- ① 건설공사 직접시공 비율 및 대상공사 상향
- ② 도급금액 50억 원 미만 건설공사 → 300억 원 미만 건설공사로 확대

〈 저가하도급 심사대상 확대 〉

- ① 하도급계약심사대상 발주자 예정가격 기준을 차등 적용

〈 하도급제도 지원 및 이행실태 점검 강화 〉

- ① 「○○시 하도급계약 지원센터」 설치 운영
- ② 하도급자 보호를 위한 제도 안내, 표준하도급계약서·하도급계획서 제출 등 서류 작성 지원, 기타 법률·민원상담(신원보호 강화)등
- ③ 발주부서의 현장중심 월별 정기점검 실시
- ④ 하도급관리 우수업체 인센티브 부여
- ⑤ 시설공사 적격심사 시 하도급관리 우수업체(표창 수상 업체)가점 부여

○○시(발주자) 건설업 재해감소 효과

- ○○시는 2013년 노량진 사고를 계기로 7월부터 건설분야 전반에 걸친 안전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대책을 수립한 이후 발주자로서의 선도적 안전관리제도를 적용하고 자발적인 안전관리프로그램을 실시한 결과 2013년 재해율 0.38% → 2014년 0.21%로 전년대비 45%를 획기적으로 감소시키는 성과를 거두었음.

3 공공기관 「안전근로협의회」 운영

1. 안전근로협회의 개념

- **(배경)** 안전근로협의회는 도급업체가 있는 공공기관에서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에 관한 애로·건의사항을 도급업체 의사결정권자에게 전혀 전달되지 않아 도급업체 안전근로협의회에서 심의·의결토록 하는 취지임
- 안전관리 중점기관인 공공기관(이하 “도급업체”라 함)이 자신의 업무를 수급한 업체(이하 “수급업체”라 함)와 안전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사업장별로 구성·운영하는 원·하청 노사 통합 안전근로협의회를 말함(사업장 단위로 운영)
- ※ 예) 한국남동발전의 경우 상시 100명 이상인 ①영흥화력발전본부 ②삼천포화력발전본부 ③분당발전본부 ④영동예코발전본부 ⑤여수발전본부 등 5개 본부에는 각각 별도의 「안전근로협의회」 운영

※ 근 거 :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제12조('19.3.28, 기획재정부)

2. 적용대상

-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대상 사업장 중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제5조의 규정에 의해 안전관리 중점기관으로 지정된 공공기관은 안전근로협의회 구성·운영
- ※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 상시 100인(건설업은 총공사금액 120억원) 이상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의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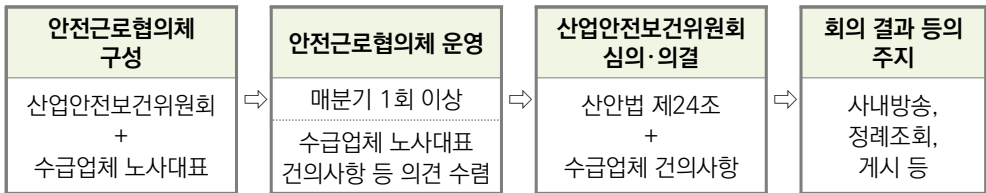
❖ 적용 제외

- **본사 등 사무직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은 제외
※ 적용대상 여부는 본사 기준이 아닌 작업장(장소적 기준) 기준으로 판단
-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는 원·하청업체 사업주가 참여하는 안전보건협의회(매월 1회) 및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대체하는 노사협의회(매2월 1회)를 운영하므로 적용 제외

3. 안전근로협의체의 구성방법

- 도급업체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수급업체 노사 대표로 구성
- 수급업체의 사측은 **현장 최고책임자(안전보건관리책임자)**, 노측은 **수급근로자를 대표하는** 자가 참여
- ※ 수급업체는 상시 작업중인 업체를 대상으로 하되, **일시·간헐적 업체***는 제외
- * 3개월(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주기) 미만 기간을 정하여 작업을 하는 수급업체

4. 안전근로협의체의 운영방법



- **(회의개최)** 매 분기 단위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정기회의시 운영
- **(수급업체 노사대표의 역할)** 당해 사업장의 안전보건과 관련하여 ① 개선요청 사항 ② 애로·건의사항 ③ 차별 등 의견 개진 및 개선요청
- **(도급업체 역할)** ① 수급인 사업장을 포함한 사업장 전체 산재예방계획 ② 도급·수급인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 ③ 수급인의 작업환경 점검 및 개선 등을 포함하여 실시
- **(심의·의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만 심의·의결
 - ※ 수급업체 안전보건관리 지원, 노사대표 건의사항 등을 포함하여 심의·의결하되, 건의사항 등이 의결로 귀속되는 것은 아님
- **(수급업체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수급업체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별도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두어야 하는 경우 **수급업체는 별도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
 - ※ 수급업체는 안전근로협의체에 참여하더라도 당해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면제되는 것이 아님
- **(불이익 금지)** 도급업체는 수급업체의 노사대표가 안전근로협의체에서 정당한 활동, 발언 등을 한 것을 이유로 그 대표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됨

IV

적격 수급업체 선정 가이드라인

1. 도급계약 입찰시 공지사항	67
2.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69
3. 평가결과 선정기준 및 환류	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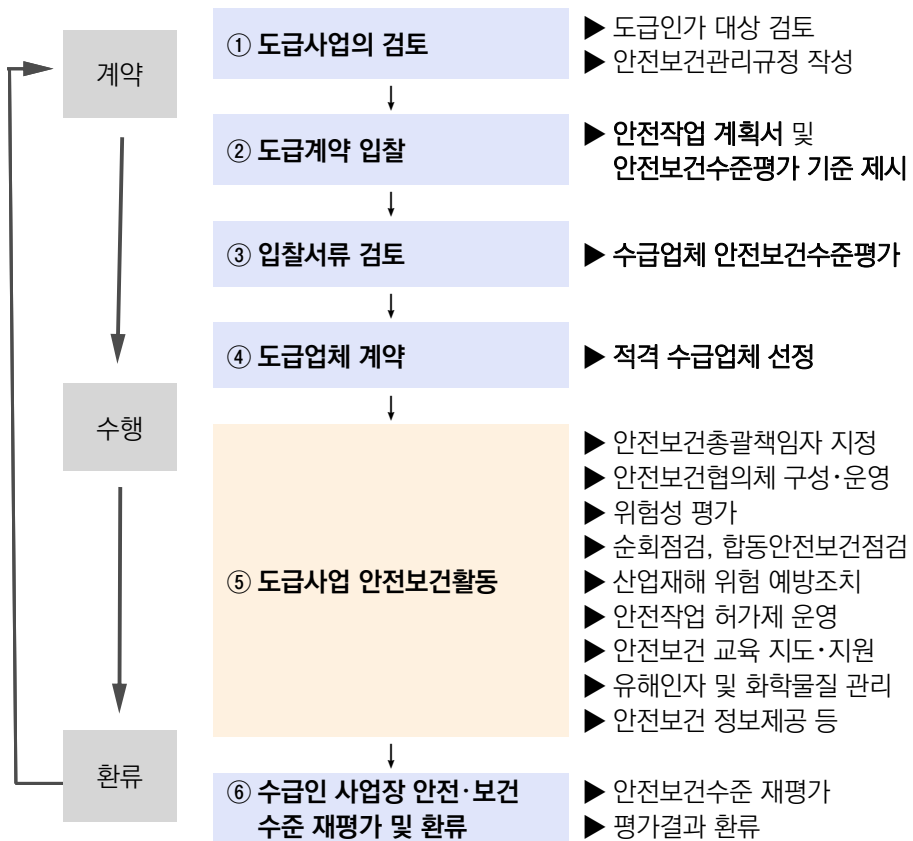
IV

적격 수급업체 선정 가이드라인

1 도급계약 입찰시 공지사항

- 도급사업 운영 시 최초 단계에서부터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고, 사업 수행 시 수급업체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실행과 평가 및 환류를 통해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체계를 운영함이 필요함

[도급사업 진행 단계별 주요 안전보건활동]



- 입찰단계에서부터 수급인 선정 시 안전보건관련 활동계획 제출 요구
 - 수급인의 안전보건 수준을 확보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하고, 지원과 평가를 통한 수급인의 안전보건관리 적정수준 확보

입찰단계

「도급사업의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수급업체 선정가이드라인」
내용을 입찰 설명 시 명확하게 제시

● **도급사업의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주요제시 사항**

-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 방안
-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 안전보건교육 계획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 계획
- 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자격·경력현황
- 최근 산업재해발생 현황 등

●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제시**

- 도급작업 시 사망사고 예방에 주안점을 둔 항목으로 구성

계약단계

「수급업체 선정가이드라인」에 따른 수급업체 안전보건관리수준
평가를 통하여 적격 수급업체 선정

● **도급인의 조치 사항과 수급인의 준수 사항을 명확히 함**

- 법규 준수 및 안전보건 조치이행 등에 대한 내용
 - ☞ 「V. 도급계약시 명시해야 할 사항」 참조

2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안전보건수준평가는 도급인의 안전보건활동 및 지도에 따를 수 있는 최소한의 역량을 갖춘 수급업체를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함이며, 본 내용은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위한 “예시”로 작성됨

1) 평가항목

- 도급작업 시 사망사고 예방에 주요한 4개 분야 12개 항목으로 구성

[안전보건수준평가 주요항목]

❖ 안전보건관리체제	
1. 일반원칙	▶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2. 계획수립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3. 역할 및 책임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 실행수준	
4. 위험성평가	▶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5. 안전점검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6. 이행확인	▶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7. 교육 및 기록	▶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8. 안전작업허가	▶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 운영관리	
9. 신호 및 연락체계	▶ 도급·수급업체 신호 및 연락체계
10. 위험물질 및 설비	▶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1. 비상대책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
❖ 재해발생 수준	
12. 산업재해 현황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 도급업체의 안전보건시스템 운영 등 도급작업장의 안전보건관리 하에서, 수급업체가 안전한 작업을 이행할 수 있는 역량의 수준을 평가

2) 평가기준 및 배점

- 도급작업장에서 재해예방의 중요도를 고려하여 평가 항목별로 점수를 부여하여 총 100점 만점으로 구성
 - 특히 실행수준에 높게 배점을 부여하여 작업장 안전실행을 강조
 - 항목별로 정량적 평가 배점 부여

❖ (안전보건관리체계 : 20점)

- 일반원칙(5), 계획수립(10), 역할 및 책임(5)

❖ (실행수준 : 40점)

- 위험성평가(5), 안전점검(10), 이행확인(10), 교육 및 기록(5), 안전작업허가(10)

❖ (운영관리 : 20점)

- 신호 및 연락체계(5), 위험물질 및 설비(10), 비상대책(5)

❖ (재해발생수준 : 20점)

- 평가 항목별 평가 세부 기준 **[붙임1 참조]**
 - 정량적 평가점수를 부여하기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 실행수준, 운영관리 등의 분야에 속한 항목별로 세부 평가기준 마련

3 평가결과 선정기준 및 환류

1) 안전보건수준 등급분류

● 등급분류

- 평가항목별 득점 따라 안전보건수준 등급분류

등 급	득 점	이 행 수 준
S	9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A	8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춘
B	7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C	6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D	60점 미만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 등급제한 : 평가항목 중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 실행수준, 운영관리” 개별 분야의 득점 하나라도 50% 미만시 D등급으로 분류

● 위험작업별 수급업체 선정기준

- 일반작업 : **C등급 이상**
- 산업재해발생 위험장소 중 화재폭발 우려 장소 및 밀폐공간 이외의 작업장소 : **B등급 이상**
- 화재폭발 우려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장소 : **A등급 이상**
- **S등급**은 차기 선정 시 안전보건수준평가 면제 또는 인센티브 부여

2) 평가결과에 따른 수급업체 관리 및 환류

☞ 평가결과 우수한 사업장은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미흡한 사업장은 수급업체 스스로 안전관리 활동을 강화하도록 관리

-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한 사업장은 차기 도급 계약 시 가점 부여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 미흡한 사업장은 자체 안전관리계획 수립 등을 통해 안전관리 활동을 강화하도록 유도

- 평가를 통해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수준과 문제점 도출이 가능하며, 평가결과를 수급업체 지원 방안 수립에 활용

〈 예 : 안전보건수준 평가를 통해 수급업체 선정(S사) 〉

☞ 평가결과 우수한 사업장은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미흡한 사업장은 수급업체 스스로 안전관리 활동을 강화토록 관리

- 원·하도급 간 상생체계 구축
 - 도급인의 지원 활동은 능동적이고 명확히 하여 수급업체가 독립적으로 안전보건 관리를 수행하는 능력 배양
-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를 수급업체 선정에 반영함으로써 수급업체에서 자발적, 점진적 안전 보건수준 향상을 유도
-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수준이 미흡한 점을 파악하여 도급업체에서 수급업체 지원 필요 사항을 도급작업 전에 확인하여 안전보건관리에 반영



도급계약 시 명시하여야 할 사항

V

도급계약 시 명시하여야 할 사항

● 안전보건교육

- 도급인은 수급인이 행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에 필요한 장소의 제공, 자료의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수급인이 교육 강사, 기자재 등을 요청할 경우 도급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도급인은 수급업체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실시 한 안전보건교육 현황을 확인하여야 한다.

● 위험성평가

- 도급인은 도급사업 시작 전에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후 미리 위험성을 감소시키고, 수급인이 작업공정에 대한 위험을 사전에 인지하도록 위험성평가 결과를 수급인에게 제공한다.
-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위험성평가 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수급인이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안전보건협의체 구성·운영

- 도급업체의 사업주는 수급업체의 사업주 전원으로 구성하는 안전보건협의체를 구성·운영한다.
- 협의체는 작업의 시작 시간, 작업 또는 작업장 연락방법, 사고발생 위험시의 대피방법, 위험성 평가 실시, 작업자 간의 연락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다.
- 협의체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한다.

● 안전보건 점검

- 도급업체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 그외 관계수급인 및 관계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와 함께 2개월 또는 분기에 1회 이상 작업장에 대한 합동 안전보건점검을 실시한다.
- 도급업체의 사업주는 작업장에 대한 순회점검을 2일 또는 1주일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관계수급업체의 사업주는 순회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되며, 점검 결과 도급업체 사업주의 시정요구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안전보건정보 제공

- 도급인은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제조·사용·운반·저장하는 화학설비 및 그 부속 설비의 개조·분해·내부 작업에 관해서는 다음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제공한다.
 - ①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서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 물질의 명칭과 해당 유해성·위험성
 - ②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개조·분해·내부 작업에 대한 안전보건상의 주의사항
 - ③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물질의 유출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필요한 조치 내용
- 수급인은 도급받은 작업을 재하도급하는 경우 제공받은 문서의 사본을 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재하수급인에게 제공한다.
- 정보를 제공한 자는 해당 근로자가 제공된 정보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받고 있는지 확인 하여야 한다.

● 공사기간 등 준수

- 도급인은 공사비를 줄이기 위해 위험성이 있는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공법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 도급인은 설계도서 등에 따라 산정된 공사기간을 단축하여서는 아니 된다.
- 수급인이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공법 변경, 가시설 설계의 보강 등을 요청할 경우 도급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증가된 비용에 대해서 도급 금액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 위생시설 등의 협조

- 도급인은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급인에게 위생시설을 제공하거나 자신의 위생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 ※ 위생시설: 휴게시설, 세면·목욕시설, 세탁시설, 탈의시설, 수면시설
- 도급업체의 사업주와 수급업체의 사업주는 근로자가 쾌적한 작업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한다.

- **안전보건조치 이행**

- 도급업체 사업주는 관계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해당 작업과 관련하여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수급인과 수급인의 근로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 도급인 및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가 심의·의결 또는 결정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 **산업재해현황 제출**

- 도급사업에서 “통합 산업재해 현황 조사표” 작성을 위하여 수급인은 사업장 정보, 수급인의 근로자수 및 재해현황 등을 도급인에게 제출하고 관련 현황 파악에 협조하여야 한다.

-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 도급업체 사업주는 수급업체 근로자와 작업장소에서 발파작업, 화재·폭발, 토사·구축물 등의 붕괴 또는 지진 등을 대비하여 상호간에 연락체계 및 신호방법을 정하고 대피방법에 따라 정기적인 교육·훈련을 실시 한 후 개선사항을 보완하여야 한다.



부 록

- | | |
|--------------------------------|----|
| 1.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세부기준 | 81 |
| 2. 도급 시 산업재해예방 운영지침
(고용노동부) | 87 |

붙임 1 |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세부기준(예시)

□ 사업장명:

구 분	배점	득점
합 계	100	
A. 안전보건관리체제	20	
B. 실행수준	40	
C. 운영관리	20	
D. 재해발생 수준	20	

□ 평가항목 및 기준

평가항목	평 가 기 준	배점	득점
A. 안전보건관리체제	소계	20	
1. 일반원칙	○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2. 계획수립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10	
3. 역할 및 책임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본사, 현장)	5	
B. 실행수준	소계	40	
4. 위험성평가	○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5	
5. 안전점검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10	
6. 이행확인	○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10	
7. 교육 및 기록	○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8. 안전작업허가	○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10	
C. 운영관리	소계	20	
9. 신호 및 연락체계	○ 도급·수급업체 간 신호체계 및 연락체계	5	
10. 위험물질 및 설비	○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11. 비상대책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대책(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	5	
D. 재해발생 수준	소계	20	
12. 산업재해 현황	○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20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 다음의 각 항목별 점수 부여시 (우수), (보통), (미흡) 점수의 중간점수 부여 가능

A. 안전보건관리체제

1. 일반원칙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3	1

- ① 우수
 - 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에 따라 적정하게 수립
 - 수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함
 - 안전보건방침에는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
- ② 보통: 안전보건방침의 상호 어긋남이 없으나, 수급사업주의 방침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 ③ 미흡: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나거나 또는 방침이 없거나 또는 내용이 상당부분이 결여됨

2. 계획수립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10	5	1

- ① 우수
 -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수급업체의 이행계획에는 도급업체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 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됨
 - 이행계획에는 관련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포함
- ② 보통: 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 ③ 미흡: 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3. 역할 및 책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5	3	1

① 우수

-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급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하청업체의 본사 및 현장별 구분)
-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함

② 보통: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내용의 상당부분이 미흡

B. 실행수준

4. 위험성평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업체에서 제공한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5	3	1

① 우수

-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아차사고를 포함한 재해사례를 숙지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
-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② 보통: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5. 안전점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10	5	1

① 우수

- 도급작업의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 전·중·후 필수 안전점검 항목을 숙지함
- 안전보건 이행계획별 목표가 달성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측정함
- 작업개시 전 공정별로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과 착용확인이 절차에 따라 운영됨

- ② 보통: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안전점검항목의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 ③ 미흡: 작업중 또는 작업후의 안전점검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됨

6. 이행확인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점검결과 개선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절차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및 확인포함)	10	5	1

- ① 우수
 - 도급업체의 안전보건 지도조언에 대한 개선 및 확인절차가 수립되어 이행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으로 도출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수립되고 작업개시 전 안전조치 개선완료 확인 및 이행
 - 개선사항에 대한 추가 위험성평가 실시 및 해당 작업자에게 결과 주지함
- ② 보통: 이행확인절차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완료확인·작업중지 및 추가 위험성평가 등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 ③ 미흡: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미수립 되거나,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이 불분명하는 등 상기내용의 요건을 상당부분 누락됨

7. 교육 및 기록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3	1

- ① 우수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 안전보건교육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
 - 법정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 교육 포함
- ② 보통: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
- ③ 미흡: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8. 안전작업허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	10	5	1

① 우수

-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등이 지정되고 역할이 부여됨
- 안전작업허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② 보통: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가 미흡함

③ 미흡: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 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됨

C. 운영관리

9. 신호 및 연락체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수급업체간 신호 및 연락체계	5	3	1

① 우수

- 도급작업에서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신호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으로 수립됨
- 도급업체와 수급업체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② 보통: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체계, 연락체계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상호간 연락 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상당 부분이 내용이 누락됨

10. 위험물질 및 설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5	1

① 우수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가 수립됨
- 도급업체에서 제공되는 기계설비 또는 자체 기계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내역을 파악함

② 보통: 안전성 확인계획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기계설비별로 작업전 점검항목 또는 도급 업체에서 제공하는 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파악의 일부분 누락이 있거나 업무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 ③ 미흡: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업무절차가 없거나 또는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이 누락됨

11. 비상대책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고용노동부, 소방서, 병원 포함)	5	3	1

- ① 우수
-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 비상대응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됨
 - 발생유형별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를 구비하고 훈련 실시됨
 - 비상연락체계에는 고용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연락체계 및 전문의료기관을 포함
- ② 보통: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소방훈련 등 일부 유형의 비상대응 훈련만 실시됨
- ③ 미흡: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등 비상대응계획의 상당 부분의 누락이 있음

D. 재해발생 수준

12. 산업재해 현황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20	10	1

- ① 우수: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 ② 보통: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 ③ 미흡: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붙임 2 | 도급시 산업재해예방 운영지침(고용노동부)

I. 목 적

- 산업구조의 변화로 외주화의 확대·심화, 특히 **유해·위험한 작업** 등의 도급에 의해 **관계수급인(하청) 근로자의 사망사고가 빈발함**에 따라
 - **도급인(원청)의 산업재해 예방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 등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부 개정('19.1.15. 공포, '20.1.16. 시행)
-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도급에 관한 정의** 등을 새로 규정하고, 유해한 작업의 도급을 금지하는 등 **도급에 관한 산업재해 예방 규율체계를 전반적으로 재구축**
 -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은 **사내도급을 금지 또는 승인**을 받도록 제한하였고, **승인받은 작업의 재하도급 금지** 및 도급 시 산재예방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도록 **적격수급인 선정 의무를 신설**
 - 또한, 수급인 근로자 보호를 위한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의 책임범위를 대폭 확대**하였으며, 도급인이 의무를 위반한 경우 **처벌 수준을 강화**
 - 이 외에도 **관계수급인 근로자 보호**를 위한 협의체 운영 및 작업장 순회점검 등 **도급인으로서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를 명확화**
- 그러나 **신설된 규정과 책임범위 확대 등 개정된 규정이 종전규정과 상당한 차이가 있어 법 적용과정에서 현장의 혼선 우려**
 - 이에 따라 도급인 및 건설공사 발주자의 구분 및 적용기준, 확대된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의 책임범위, 도급인이 구체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에 대해
 - 구체적인 적용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개정 법령의 원활한 시행**과 함께 사망사고가 다발하는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실질적인 보호 유도 추진**

Ⅱ. 도급 제한 관련 법령 규정 및 주요 내용

※ 「도급금지·도급승인 제도 운영지침」을 기 시달('19.12월)한 바 유해·위험한 작업의 도급 금지 및 승인제도 관련 구체적 내용은 해당 지침을 참고

1. 유해한 작업의 도급 금지 (법 제58조)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도급하여 자신의 사업장에서 수급인의 근로자가 그 작업을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도급작업
2. 수은, 납 또는 카드뮴의 제련, 주입, 가공 및 가열하는 작업
3. 제118조제1항에 따른 허가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작업

② 사업주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작업을 도급하여 자신의 사업장에서 수급인의 근로자가 그 작업을 하도록 할 수 있다.

1. 일시·간헐적으로 하는 작업을 도급하는 경우
2. 수급인이 보유한 기술이 전문적이고 사업주(수급인에게 도급을 한 도급인으로서의 사업주를 말한다)의 사업 운영에 필수 불가결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 개정 배경

- 종전 도급 인가 작업*은 유해·위험성이 높고 단기간에 직업병 발견이 어려우므로 사내 도급을 허용할 경우 수급인의 잦은 변경으로 해당 작업을 수행한 노동자에 대한 안전·보건 관리 한계

* 도급작업, 수은, 납, 카드뮴의 제련, 주입, 가공, 가열작업, 허가대상물질 제조·사용작업

- 따라서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사내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할 필요

□ 주요 개정사항 개요

〈종 전〉	〈개 정〉
〈도급금지(인가) 대상 작업〉 1. 도금작업 2. 수은, 납, 카드뮴 등 중금속을 제련, 주입, 가공 및 가열하는 작업 3.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물질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작업 * 종전에는 인가를 받아 사내도급 가능	〈도급금지 대상 작업〉 1. 도금작업 2. 수은, 납 또는 카드뮴의 제련, 주입, 가공 및 가열하는 작업 3. 법 제118조제1항에 따른 허가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작업 * 원칙적 금지, 다만, 일시·간헐 작업은 도급 가능, 수급인의 기술이 전문적이고 도급인 사업 운영에 필수 불가결한 경우는 승인 받으면 도급 가능
〈벌칙〉 도급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과징금〉 도급금지 의무를 위반하거나 승인 없이 도급하는 경우 10억 원 이하 과징금

□ 개정 내용

- **(도급금지) 종전 도급 인가 대상 작업의 사내도급은 원칙적으로 금지**
 - ① **도금작업**은 금속 표면에 다른 금속을 입히는 **본 작업** 뿐만 아니라 해당 작업의 **부수 작업** (전처리, 마무리 등)으로서 근로자가 사용·취급하는 화학물질 등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 있는 작업도 포함
 - ② **수은, 납, 카드뮴*의 제련, 주입, 가공, 가열 작업**

* 개정법은 ‘수은, 납, 카드뮴 등 중금속’ → ‘수은, 납, 카드뮴’으로 명확히 함

작업 공정	내 용
제 련	채굴된 암석(광석)에서 목적하는 금속을 추출하여 괴 또는 가루로 만드는 공정
주 입	제련시 추출한 금속물질(괴 또는 가루)을 로(爐)에서 녹여 주형(鑄) 등에 금속을 부어 넣는 공정
가 공	금속재료를 절단하거나 구멍 뚫기 등을 거친 후, 용접 및 리벳 등을 이용하여 접합하는 공정
가 열	금속 또는 합금에 요구되는 성질 즉 강도, 경도(변형률), 내마모성, 내충격성 및 가공성 등의 성능을 확보하기 위하여 열을 가하는 공정

③ 허가대상 유해물질 제조·사용 작업

안전보건규칙 제452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허가대상 유해물질”이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는 제조·사용이 금지되는 물질로서 영 제88조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 (디클로로벤지딘, 베릴륨, 비소, 황화니켈, 염화비닐 등 12가지 화학물질)
2. “제조”란 화학물질 또는 그 구성요소에 물리적·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허가대상 유해물질로 전환하는 과정을 말한다.
3. “사용”이란 새로운 제품 또는 물질을 만들기 위하여 허가대상 유해물질을 원재료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 ‘원재료’는 ‘어떤 제품을 만드는 과정에 투입되는 주재료, 부재료의 총칭’이므로 ‘**촉매 교체**’도 허가대상물질 제조·사용으로 해석하여 **도급금지 대상**으로 봄

- (도급금지 예외) ① **일시·간헐적 작업** 또는 ② **수급인의 기술이 전문적이고 해당 기술이 도급인의 사업 운영에 필수 불가결한 경우**로서 승인을 받는 경우에 사내도급 허용함

도급금지 예외 판단

- **일시·간헐 작업 도급금지 예외의 기본원칙은 상시인력 고용이 어려운 사정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임**
 - * 일시적 작업은 그 수요가 갑자기 발생하여 상시인력 고용이 불가능한 경우, 간헐적 작업은 작업의 수요는 예측이 되나, 오랜 기간의 간격을 두고 발생하여 상시인력 고용이 어려운 경우임
 - 상시인력 고용이 어려운 사정이 인정되더라도 ‘**일시적 작업**’은 ‘**30일 이내 종료되는 1회성 작업**’으로 ‘**간헐적 작업**’은 **연간 총 작업일수가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작업**으로 제한
- ‘**일시·간헐적 작업**’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갑작스런 주문증가, 생산계획 변경 등 **예측이 불가능한 요인으로 발생한 업무로서 기존 인력 대처 한계인 경우**로 봄 (연중 반복적으로 발생하지 않아야 함)
 - * (간헐 작업 예) 허가대상물질 비소화합물 촉매 교체 작업으로 10개월마다 하는데, 특수장비가 필요하며, 통상 작업기간은 40일이 소요되어 해당 작업에 필요한 인력을 상시 고용하기 어려움이 인정됨(황화니켈 촉매 교체는 4년마다 함)
- ‘**전문적 기술**’이란 도급인이 습득·보유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기술임이 지정, 고시, 공고, 인증, 특허 등에 의해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
- ‘**필수 불가결**’이란 해당 기술이 없다면 도급인의 전체 사업 중 **도급과 관련된 사업의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 (처벌규정) 도급금지 등 의무 위반 시 **10억 원 이하 과징금**

* 종전에는 벌칙 규정(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었으나, 제재 실효성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으로 변경

2. 도급 승인 및 도급 승인 시 하도급 금지 (법 제59조, 제60조)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등

법 제59조(도급의 승인) ① 사업주는 자신의 사업장에서 안전 및 보건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 중 급성 독성, 피부 부식성 등이 있는 물질의 취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을 도급하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

법 제60조(도급의 승인 시 하도급 금지) 제5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승인, 같은 조 제5항 또는 제6항(제59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연장승인 또는 변경승인 및 제59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작업을 도급받은 수급인은 그 작업을 하도급할 수 없다.

시행령 제51조(도급승인 대상작업) 법 제59조제1항 전단에서 “급성 독성, 피부 부식성 등이 있는 물질의 취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말한다.

1. 중량비율 1퍼센트 이상의 황산, 불화수소, 질산 또는 염화수소를 취급하는 설비를 개조·분해·해체·철거하는 작업 또는 해당 설비의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다만, 도급인이 해당 화학물질을 모두 제거한 후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 개정 배경

- (도급승인)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 중 급성 독성, 피부 부식성 등이 있는 물질*의 취급으로 인한 산업재해가 다수 발생하며,

– 특히 유해·위험물질 취급 설비의 유지·보수** 등의 장시간 작업은 직업병을 유발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사내도급 시 승인 절차 마련 필요

* 황산, 불화수소, 질산, 염화수소는 급성독성, 피부부식성 등이 있는 물질로, 화학물질로 인한 재해 중 다수 차지{최근 10년간 화학물질로 인한 산업재해 3,665건 중 558건(15.2%)}

** ‘화학물질 자체 독성’ 이외에 도급에 의해 수행되는 유지·보수작업 등 ‘작업방식’이 재해 유발 요인으로 작용(화학물질의 일반 취급자보다 유지보수 시 투입, 취급하는 수급인 노동자가 피해가 큼)

- (하도급 금지) 도급받은 작업을 다시 하도급하는 이른바 **다단계 하도급**의 경우 도급인의 위험관리 및 도급인과 수급인간 의사소통이 어려워 **사고발생의 위험이 높아지므로 하도급 금지 도입 필요**

* 도급받은 작업을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 도급인이 재 하도급받은 자에 대해 정상적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관리가 사실상 불가능

□ 주요 개정사항 개요

〈종 전〉	〈개 정〉
〈신 설〉	〈도급승인 대상〉 중량비율 1퍼센트 이상의 황산, 불화수소, 질산, 염화수소를 취급하는 설비를 개조·분해·해체·철거하는 작업 또는 해당 설비의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신 설〉	⇒ 〈도급승인 시 하도급 금지〉 도급금지의 예외적 승인작업(제58조), 유해·위험한 물질의 취급 작업 등 승인대상 작업(제59조)은 하도급 금지
〈신 설〉	〈과징금〉 승인 없이 도급하는 경우(제58조제2항, 제59조, 제60조 위반) 10억 원 이하 과징금

□ 개정 내용

- **(도급승인 대상 작업)** 중량비율 1퍼센트 이상의 황산, 불화수소, 질산, 염화수소를 취급하는 설비를 개조·분해·해체·철거하는 작업 또는 해당 설비의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 **(도급승인 제외)** 도급인이 해당 화학물질을 모두 제거한 후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한 경우 도급승인 제외

* **(제거방법)** 배관·설비 등 화학물질 제거(Draining) → 초순수·용수 및 질소 등을 사용 잔여물, 치환 가스가 남아 있지 않도록 배관·설비 세척 및 치환

* **(제거증명자료)** ① 안전작업 절차서 및 작업구간, 세정방법 등을 포함한 내용, ② 화학물질 제거 전·후 현장사진, ③ pH meter 검증 자료(황산, 불산, 질산, 염산(액상)-결과값은 중성 pH 5.8~8.6) 또는 가스검지기 측정결과(불화수소, 질산, 염화수소-결과값은 불검출(Not Detected) (가스검지기 교정성적서 포함)

- **(도급승인 시 하도급 금지)** 도급금지의 예외적 승인작업(제58조제2항) 및 유해·위험한 물질(황산 등)의 취급 작업 등 승인대상 작업(제59조)은 하도급 할 수 없음
 - * 다만, 해당 화학물질을 모두 제거한 후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도급승인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하도급 가능
- **(처벌규정)** 도급승인 및 하도급 금지 의무 위반 시 10억 원 이하 과징금 부과

Ⅲ.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관련 법령 규정 및 적용기준

1. 도급 관련 정의 규정 (법 제2조, 신설)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도급”이란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한다.
7. “도급인”이란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하는 사업주를 말한다. 다만, 건설공사발주자는 제외한다.
8. “수급인”이란 도급인으로부터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받은 사업주를 말한다.
9. “관계수급인”이란 도급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에 각 단계별로 도급받은 사업주 전부를 말한다.
10. “건설공사발주자”란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시 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
11. “건설공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
 - 나. 「전기공사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공사
 - 다. 「정보통신공사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 라. 「소방시설공사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 마.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공사

개정 배경 및 주요내용

□ 개정 배경

- 舊. 「산업안전보건법」도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와 건설공사발주자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를 부여하고 있었으나, 도급인과 건설공사발주자에 대한 명확한 정의 규정이 없어 일부 혼란 발생

* 舊.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의2 : 안전보건조정자 선임의무
제30조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의무

- 특히,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관계수급인 근로자 보호를 위해 도급인의 책임을 강화**하고, 건설공사발주자에게 산재예방 조치의무*를 추가함에 따라

- 각 주체별 명확한 산재예방 책임 부여를 위해 도급인과 건설공사발주자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할 필요

* 50억 원 이상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건설공사발주자)는 계획·설계·시공 단계별 안전보건대장 작성 및 이행여부 확인

□ 개정 내용

- (도급)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은 ‘일의 완성 또는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 「민법」상 도급계약 뿐만 아니라
- 그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자신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의미하며 이 때 타인에게 맡기는 업무가 **부수적이거나 보조적인** 경우에도 적용됨

유사 입법례

민법 제664조(도급의 의의)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정의) 11. “도급”이란 원도급, 하도급, 위탁 등 명칭에 관계없이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공사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문화재수리법 제2조(정의) 13. “도급”이란 원도급(原都給), 하도급(下都給), 위탁, 그 밖의 어떠한 명칭으로든 상대방에게 **문화재수리, 실측설계 또는 감리를 완성하여 주기로 약정하고, 다른 상대방은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 (도급인) 자신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사업주를 말하며, 건설공사 도급인 이외에 건설공사발주자 정의를 신설하여 건설공사의 안전 및 보건을 강화
- (수급인) 도급인으로부터 도급받은 사업주를 말하되, 중층적 도급관계는 고려하지 않음
- (관계수급인) 중층적 도급관계에서 각 단계별로 도급받은 사업주 전부를 의미함
- (건설공사발주자)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지 아니하는 자(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시 도급하는 자는 제외)

-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 중에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자”는 **자신의 주도하에 자체사업으로 건설공사를 총괄하여 시공을 관리하는 자**를 의미

* 여기서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한다는 것은 직접 시공에 참여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며, 비건설업자가 자기 소유의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업무를 도급하고 업무의 범위, 작업내용, 작업일정 관리 등에 주도적으로 관여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임

-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공사발주자는 도급인 책임을 지지 않고, 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에 해당되며 그에 따른 책임을 부담

- 건설공사발주자는 건설현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도급인과 다른 책임을 부담하도록 규정

● (건설공사)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의 건설공사 및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 시설공사, 문화재수리공사를 모두 포함

적용기준

- ❖ 「산업안전보건법」 상 ‘도급’의 판단 기준
- ❖ 「산업안전보건법」 상 ‘도급인’과 ‘건설공사발주자’ 구분

1 기존의 해석

- (도급인) 별도의 정의는 없으나 사업장소, 사업목적 및 사업 수행과정의 관련성 등을 기준으로 도급인으로서 의무주체인지 판단
- 도급인의 사업장소에서 도급인의 사업목적 달성에 본질적이고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사업의 생산·제조 등 일련의 과정 중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는 경우에 도급인의 의무 부과

舊.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 ①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
2. 사업이 전문분야의 공사로 이루어져 시행되는 경우 각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의 전부를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

도급사업 안전·보건조치 적용 지침, '13. 1월

□ 사업의 장소 관련성

- 법 제29조는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 중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으로 행하는 사업에 적용
- 사업의 일부를 도급하더라도 같은 사업장 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운영 되는 경우 미적용**

□ 사업목적 관련성

- 도급 사업주의 사업 목적 달성에 있어 **본질적이고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사업***을 분리하여 도급을 주는 경우에 적용
 - * 기계장치, 환경·전기·전산설비 등 생산설비의 정기적·일상적 정비공사 등
- 고유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부수적이거나 보조적 사업***은 미적용
 - * 경비, 조경, 청소 등 용역서비스, 통근버스운행, 구내식당 등 복리후생시설 위탁 운영 등

- **(발주자)** 별도의 건설공사발주자 정의는 없으나,

- ① 안전보건조정자 선임의무(중전법 제18조의2) 규정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0호에 따라 건설공사를 **건설사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로
- ②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의무(중전법 제30조) 규정에서는 건설공사를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로 발주자의 개념을 사용하고 있음

舊. 「산업안전보건법」 등

제18조의2(안전보건조정자) ①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0호의 발주자로서 다음 각 호의 공사, 다음 각 호의 공사와 그 밖의 건설공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와 그 밖의 건설공사를 함께 발주하는 자는 그 각 공사가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경우 그에 따른 작업의 혼재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건설공사현장에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어야 한다.

1. 「전기공사업법」 제11조에 따라 분리발주하여야 하는 전기공사
2.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5조에 따라 분리하여 도급하여야 하는 정보통신공사

제30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등) ① 건설업, 선박건조·수리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와 이를 자체사업으로 하는 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자체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하여야 한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2019-64호)

제4조(계상기준) ① 공사를 다른 이에게 도급하는 자(이하 “발주자”라 한다)와 건설업을 자체사업으로 하는 자(이하 “자기공사자”라 한다)는 안전관리비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계상하여야 한다.

2 유사입법례

- (도급) 다른 법령에서는 일(건설공사, 문화재 수리 등)의 완성을 약정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계약을 도급으로 규정
-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으로 도급을 규정하여 업무의 완성과 대가의 지급관계로 한정하지 않음

다른 법령에서의 도급 정의

민법 제664조(도급의 의의)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정의) 11. “도급”이란 원도급, 하도급, 위탁 등 명칭에 관계없이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공사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

전기공사사업법 제2조(정의) 5. “도급”이란 원도급, 하도급, 위탁, 그 밖에 어떠한 명칭이든 상관없이 전기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

정보통신공사사업법 제2조(정의) 12. “도급”이란 원도급, 하도급, 위탁, 그 밖에 명칭이 무엇이든 공사를 완공할 것을 약정하고, 발주자가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13. “도급”이란 원도급, 하도급, 위탁, 그 밖의 어떠한 명칭으로든 상대방에게 문화재수리, 실측설계 또는 감리를 완성하여 주기로 약정하고, 다른 상대방은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

- (발주자) 건설공사 관련법에서는 각각의 법에서 정하고 있는 공사업자에게 공사를 도급하는 자를 발주자로 정의하고 있음

-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를 건설공사발주자로 정의하고 도급인과 구분*

* 건설공사에서 도급인은 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해당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 또는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자

다른 법령에서의 발주자 정의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정의) 10. “발주자”란 건설공사를 건설사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

전기공사사업법 제2조(정의) 4. “발주자”란 전기공사를 공사업자에게 도급을 주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전기공사를 하도급 주는 자는 제외한다.

정보통신공사사업법 제2조(정의) 11. “발주자”란 공사(용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공사업자(용역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공사를 하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

소방시설공사사업법 제2조(정의) 5. “발주자”란 소방시설의 설계, 시공, 감리 및 방염(이하 “소방시설공사등”이라 한다)을 소방시설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공사를 하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14. “발주자”란 문화재수리, 실측설계 또는 감리를 문화재수리업자, 문화재실측설계업자 또는 문화재감리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문화재수리를 하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

3

세부기준

**[본 세부기준은 일반적인 원칙이며, 개별적인 사례에서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
해당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판단 필요]**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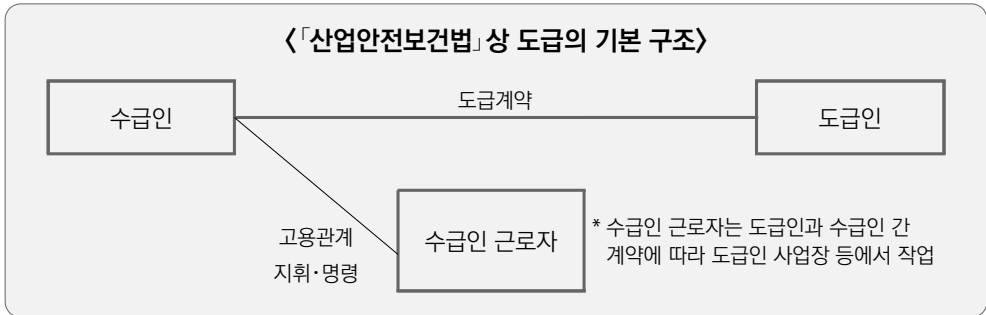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6. “도급”이란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한다.
7. “도급인”이란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하는 사업주를 말한다. 다만, 건설공사발주자는 제외한다.
8. “수급인”이란 도급인으로부터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받은 사업주를 말한다.
9. “관계수급인”이란 도급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에 각 단계별로 도급받은 사업주 전부를 말한다.

-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폭넓은 보호를 위해 도급의 정의를 일의 완성 또는 대가의 지급여부와 관계없이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으로 확대하고 있음
 - 계약의 명칭(용역, 위탁 등)에 관계없이 자신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도급으로 판단**
- 따라서 도급인의 업무에 해당한다면 **사업목적과 ①직접적 관련성이 있는 경우** 뿐만 아니라 **②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경우***에도 도급에 포함
 - * ①기계장치, 전기·전산설비 등 생산설비에 대한 정기적·일상적인 정비·유지·보수 등, ②경비·조경·청소 등 용역서비스, 통근버스·구내식당 등 복리후생시설 운영 등
- 한편,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은 수급인(또는 도급인)이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사업주임을 전제(도급인 및 수급인과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3자 관계)로 한 것이므로

- 사업주가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개인사업자에게 자신의 업무를 맡기는 계약의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예) 사업주가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개인사업자에게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이라고 하기 어려움



예시 1 하수처리시설 운영의 위탁이 도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지방자치단체 또는 환경공단이 하수처리시설의 운영을 민간업체에 위탁하는 것은 자신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이므로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으로 판단할 수 있음

예시 2 하자보수(A/S)가 도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 통상적인 제품이 갖추어야 할 상품 자체의 품질이나 성능결함으로 인한 하자를 보증기간 내에 수리하는 것은 제조물에 대한 하자보수(A/S)로서 제조자 자신의 업무*이나,

* 민법 제580조: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제조물 책임법 제3조: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

- 보증기간이 지났거나 사용자 귀책으로 발생한 고장으로 인하여 보수를 맡기는 경우라면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으로 볼 수 있음

※ 제조물에 대한 하자보수 업무가 제조자의 업무라 하더라도, 제조자 소속 근로자 등이 제품 사용 사업장에서 하자보수 작업 중 해당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할 경우 제품 사용 사업주는 안전 조치 의무위반 등으로 책임을 질 수 있음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공사발주자’인지 ‘도급인’인지 여부〉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도급인”이란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하는 사업주**를 말한다. 다만, 건설공사발주자는 제외한다.
10. “건설공사발주자”란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시 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
11. “건설공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
 - 나.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공사
 - 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 라.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 마.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공사

개별 법령에서의 건설공사 정의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정의) 4.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

전기공사업법 제2조(정의) 1. “전기공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 등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 및 이에 따른 부대공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정의) 2. “정보통신공사”란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공사와 이에 따르는 부대공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말한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정의) 1. 나. 소방시설공사업 : 설계도서에 따라 소방시설을 **신설, 증설, 개설, 이전 및 정비**(이하 “시공”이라 한다)하는 영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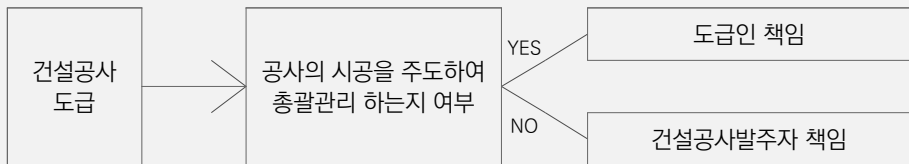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1. “문화재수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의 **보수·복원·정비 및 손상 방지를 위한 조치**를 말한다.

- 개정법에서는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경우** 도급을 준 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한다면** (자기공사자) **도급인** 책임을, 그렇지 **않다면** **건설공사발주자** 책임을 지게 됨

- 이 때 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지 여부**는 당해 건설공사가 **사업의 유지 또는 운영에 필수적인 업무인지**, **상시적으로 발생하거나 이를 관리하는 부서 등 조직을 갖췄는지**, **예측 가능한 업무인지** 등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 건설사업관리, 감리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 건축사법 등에서 의무를 부여한 사항으로 이를 총괄·관리로 보지 아니함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인지 발주자인지 구분〉



- 제조업 등에서 **기계·설비의 정비, 수리 및 유지관리*** 등을 도급하는 경우 **도급인** 책임을 지게 됨

* 산업용 기계·장비 및 용품을 전문적으로 수리·유지하는 산업활동은 표준산업분류표상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제조업)으로 분류

표준산업분류표 상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 **제품을 제조 및 판매하지 않는 사업체가 계약 또는 수수료에 의하여 산업용 기계·장비 및 용품을 전문적으로 수리·유지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은 대부분 자본재로 사용되는 기계, 장비 및 용품(고정자본을 형성하는 재화류)을 대상으로 하며, 소비재와 자본재로 함께 사용하거나 소비재로 대부분 사용되는 재화류와 자동차 및 관련 부품 유지·보수활동은 수리업(95)으로 분류한다.

- 다만, **도급하는 업무가 건설공사인 경우** 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도급인 책임** 또는 **건설공사발주자 책임**을 지게 됨

예시 1 시설물의 유지·보수공사를 도급하는 경우

- ① 수리·보수 또는 정비 공사가 **도급을 준 업체와 공동으로 작업을 한 경우에는 그 작업을 총괄하는 것으로 도급인의 책임**을, 상시적으로 발생하는 수리·보수도 **도급인의 책임**을 지게 됨
- 예1) 제조업체에서 공무팀 주관하에 보일러 교체공사 일부를 도급한 후 그 제조업체와 도급받은 업체가 공동으로 시공하는 경우
- 예2) 상시적으로 발생하는 컨베이어 부품 교체 등 장치를 수리·보수하는 경우
- ② 건설공사 등 업무를 도급하는 경우에 도급하는 자가 **그 공사를 총괄·관리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건설공사발주자 책임**을 지게 됨
- 예) 건축물의 신축·증축, 재개발, 리모델링 공사를 건설업자에게 도급하는 경우
- ③ 대규모 장치산업(석유화학업종, 철강업종 등)에서 **대정비·대보수 공사를 할 때,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가 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지 여부**에 따라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도급인 여부를 판단
- ※ 대규모 장치산업에서 대정비·대보수 공사 중 중대재해 발생 시 산업법 적용은 ①사업주로서 자신의 사업장에 존재하는 위험요인의 지배·관리가능성, ②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업주,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도급인 여부를 판단할 필요(구체적인 판단은 계약내용, 작업수행, 감시·감독, 관계자 조사 등)

▶ 시공의 의미와 관련하여 판례에서도 시공은 반드시 물리적 건설행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판시하고 있음

[대법원, 2003. 7. 11., 2001도1332]

구 건설산업기본법(1999. 4. 15. 법률 제59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아래에서는 '법'이라고만 한다) 제21조 소종의 '시공'이라 함은 직접 또는 도급에 의하여 설계에 따라 건설공사를 완성하기 위하여 시행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한다.

예시 2 기계설비 등의 설치·해체 또는 정비·수리공사를 도급하는 경우

- ① 발전소에서 컨베이어벨트 **경상정비 및 기계 정비·수리를 기계설비 업체***에 도급을 주어 그 업체가 발전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건설공사에 해당하지 않아** 도급하는 사업주는 **도급인** 책임을 지게 됨

* 산업용 기계·장비 및 용품을 전문적으로 수리·유지하는 산업활동에 해당하여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제조업)에 해당

- 도급하는 업무가 관련법상 건설공사에 해당하여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 하더라도,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이 아니라 계약의 내용 및 수행방법 등을 보아 도급하는 사업주가 **실질적으로 그 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경우 **도급인** 책임을 지게 됨

- ② 사용하지 않는 보일러·플랜트 해체, 기존에 설치된 물탱크 교체 등 **기계설비를 설치, 교체 또는 해체**하는 경우

- 도급하는 자가 그 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경우 **도급인의** 책임을 지게 되고, 그 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건설공사발주자** 책임을 지게 됨

- ③ 제조업체에서 기계·설비에 대한 **설치·해체와 정비·수리를 합하여 하나의 단가계약방식**으로 도급하는 경우에는

- **단위작업의 성격*에 따라** 건설공사발주자인지 도급인인지 판단

* 정비·수리 등 건설공사가 아니면 도급인 책임, 설치·해체 등 건설공사이면서 그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경우 도급인 책임, 건설공사에 해당하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지 않는다면 건설공사발주자 책임을 지게 됨

※ 다만, 법 제58조 및 제59조에 따라 유해·위험작업의 도급 시 승인을 받아야 할 의무가 있는 자는 '자신의 사업장에서 도급하려는 자'이므로 도급인 또는 건설공사발주자에 관계없이 자신의 사업장에서 해당 작업을 도급하려는 자가 승인받아야 함

2.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법 제10조, 제38조, 제39조, 제63조)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등

법 제10조(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도급인의 사업장(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경우로서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경우에 도급인의 산업재해발생건수등에 관계수급인의 산업재해발생건수등을 포함하여 제1항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11조(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장소) 법 제1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

* 토사·구축물·인공구조물 등 붕괴 우려 장소, 추락 위험 장소 등 14개 장소

시행규칙 제6조(도급인의 안전·보건 조치 장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15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

* 화재·폭발 우려 있는 작업 장소 등 7개 장소

법 제38조(안전조치)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

②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구축물 등 붕괴 우려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 발생 우려 있는 장소

④ 사업주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하는 조치(이하 “안전조치”라 한다)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법 제39조(보건조치)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이하 “보건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 원재료·가스·증기·분진·흙·미스트·산소결핍·병원체 등에 의한 건강장해, 방사선·유해광선·고온·저온·초음파·소음·진동·이상기압 등에 의한 건강장해,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기체·액체 또는 찌꺼기 등에 의한 건강장해, 계측감시(計測監視), 컴퓨터 단말기 조작, 정밀공작(精密工作) 등의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단순반복 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환기·채광·조명·보온·방습·청결 등의 적정 기준을 유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하여야 하는 보건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법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한다.

개정 배경 및 주요내용

□ 개정 배경

- 舊,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도급인으로 하여금 **관계수급인과 함께**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도록 **공동 책임**을 부과하고 있으나
 - 도급인 사업장 내 위험장소(22개)가 아닌 경우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에 대하여 도급인의 책임을 물을 수 없었음
 - * ① 사업의 일부 또는 전문 분야 공사 전부를 도급하면서 ② 도급인 근로자와 수급인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해야 하며, ③ 작업장소가 추락, 토사 붕괴 등 22개 위험발생 장소인 경우에 한해서만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조치 의무 부담
- 도급인의 사업장 내 22개 위험장소 이외에서도 **수급인 근로자 사망사고가 빈발함**에 따라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도급인의 **책임범위를 확대함**
 - * 수급인근로자 사망 비율(%): ('14) 39.9 → ('15) 42.3 → ('16) 42.5 → ('17) 41.4

□ 주요 개정사항 개요

《중 전》	《개 정》
《책임범위》 도급인의 근로자와 수급인의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하며, 22개 위험장소에 해당할 것	《책임범위》 도급인의 사업장 전체 + 도급인이 제공·지정한 경우로서 지배·관리하는 21개 위험장소
《신 설》	《직접적 조치 제한》 ⇒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에서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 조치는 제외
《처 벌》 도급인이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처 벌》 도급인이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위반으로 근로자 사망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 5년 내 재범 시 가중(형의 1/2) + 수감명령

□ 개정 내용

- **(책임범위)** 수급인 또는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를 부담하는 **도급인의 책임범위**를
- **도급인의 사업장 내 모든 장소** 및 **도급인의 사업장 밖**이라도 도급인이 **지정·제공**한 경우로서 **지배·관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21개 위험장소)로 대폭 확대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있는 장소〉

❖ (시행령 제11조)

1. 토사·구축물·인공구조물 등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장소
2. 기계·기구 등이 넘어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장소
3. 안전난간의 설치가 필요한 장소
4. 비계 또는 거꾸집을 설치하거나 해체하는 장소
5. 건설용 리프트를 운행하는 장소
6. 지반을 굴착하거나 발파작업을 하는 장소
7. 엘리베이터홀 등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8. 석면이 붙어 있는 물질을 파쇄 또는 해체하는 작업을 하는 장소
9. 공중 전선에 가까운 장소로서 시설물의 설치·해체·점검 및 수리 등의 작업을 할 때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장소
10.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11. 프레스 또는 전단기(剪斷機)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장소
12.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또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장소
13. 전기 기계·기구를 사용하여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장소
14. 철도차량(도시철도차량 포함)에 의한 충돌·협착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장소
15.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소

❖ (시행규칙 제6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소)

1. 화재·폭발 우려가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는 장소
 - 가. 선박 내부에서의 용접·용단작업
 - 나. 인화성 물질을 취급·저장하는 설비 및 용기에서의 용접·용단작업
 - 다. 안전보건규칙 제273조에 따른 특수화학설비에서의 용접·용단작업
 - 라. 가연물(可燃物)이 있는 곳에서의 용접·용단 및 금속의 가열 등 화기를 사용하는 작업이나 연삭소독에 의한 건식연마작업 등 불꽃이 될 우려가 있는 작업
2. 양중기에 의한 충돌 또는 협착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장소
3. 안전보건규칙 제420조제7호에 따른 유기화합물취급 특별 장소
4. 안전보건규칙 제574조 각 호에 따른 방사선 업무를 하는 장소
5. 안전보건규칙 제618조제1호에 따른 밀폐공간
6. 안전보건규칙 별표 1에 따른 위험물질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장소
7.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 대한 정비·보수 작업이 이루어지는 장소

- **(직접적 조치 제한)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 조치는 제외하도록 규정(법 제63조 단서)**
 - 법 제63조 단서는 도급인이 관계수급인 근로자에게 보호구 착용을 지시할 수 없다거나, 불안정한 작업행동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는 아님
 - *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에 따라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파견의 징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근로자파견 기준 판단지침, '19.12.30)
 - 오히려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관계수급인에게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고, 관계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조치를 이행하여야 함(법 제66조제1항)**
 - ※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의무는 근로계약 당사자인 관계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함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도급인의 관계수급인에 대한 시정조치) ①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관계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받은 작업과 관련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면 관계수급인에게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 **(처벌강화) 도급인이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을 강화하였으며,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사업주와 동일 수준의 처벌 부과 신설**

구분	종전	개정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위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하는 경우	〈신 설〉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①5년 내 재범 시 가중처벌(형의 1/2), ②수감명령 병과 가능)

적용기준

❖ 개정법에서 확대된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책임범위 판단, 특히 도급인의 '지배·관리'의 의미 해석

1

기존의 해석

- 舊. 「산업안전보건법」은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적용기준을 사업장소, 사업목적 및 수행과정 관련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 장소적으로 도급인 사업장과 분리¹⁾되어 있거나, 도급인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부수적·보조적 사업²⁾ 및 사업목적 수행 관련성이 없는 경우³⁾에는 도급인의 책임범위에서 제외
- 1) 도급 사업주의 사업장과 인접한 생산 간접설비 및 시설 운영
- 2) 경비, 청소 등 용역서비스, 통근버스운행, 구내식당 등 복리후생시설 위탁 운영 등
- 3) 건물·설비 등의 신축 또는 신설 공사
- (질의회시 예) 舊.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30조제4항에 규정된 산업재해 위험장소가 아닌 경우 도급인의 책임을 묻지 않음
- (판례) 舊.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30조제4항에 규정된 산업재해 위험장소가 아닌 경우 도급인의 책임을 묻지 않고
 -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경우'는 장소적인 동일성을 요구하는 것임(도·수급인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수행)

2

세부기준

〈도급인의 사업장〉

- 舊. 「산업안전보건법」: 도급인의 책임 장소를 추락, 토사 붕괴 등 22개 산업재해 발생위험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로 한정
-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도급인의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책임범위를 도급인의 사업장 전체로 확대하여

- 도급인의 사업장의 유해·위험 요인으로부터 관계수급인 근로자를 보호할 책임 의무를 부과

[본 세부기준은 일반적인 원칙이며, 개별적인 사례에서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 해당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판단 필요]

〈도급인이 제공·지정한 장소로서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장소〉

-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도급인 사업장 밖인 경우에도 다음의 ①~③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책임이 부과됨
 - ①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작업장소(시설·설비 등 포함)를 제공 또는 지정
 - ②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장소,
여기서 지배·관리란 도급인이 해당 장소의 유해·위험요인을 인지하고 이를 관리·개선하는 등 통제할 수 있음을 의미
 - ③ 해당 장소가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21개 장소에 해당

예시 1

- 사업장 밖의 안전시설이나 주요설비의 경우에도 수급인이 임의로 설치·해체 및 변경할 수 없거나 도급인과 협의하여야 가능한 경우에는 도급인의 지배·관리 범주에 해당
- 이와 달리 ①수급인 자신이 작업장소나 시설·설비 등을 소유하거나 도급인이 아닌 제3자로부터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 ②시설·설비 및 장비에 대한 시설변경 및 안전장치 설치·해체를 수급인의 필요에 따라 임의로 행하는 경우 등은 도급인의 지배·관리 영역 밖임

예시 2

- 도급인이 자신의 업무를 관계수급인에게 맡기기 위하여 작업장소나 설비를 임대계약의 형식으로 지정·제공하였다 하더라도,
 - 계약의 실질이 지배·관리 요건^{*}을 충족한다면 그 장소는 도급인의 책임장소로 볼 수 있음
 - * 해당 장소의 유해·위험요인을 인지하고 이를 관리·개선하는 등 통제할 수 있음

예시 3

-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작업장소나 시설 등을 무상임대**하고, 이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도급인의 지배·관리 범주에 해당

예시 4

- 도급인 사업장 밖의 **제3자 소유의 작업장소***나 수급인 소유 시설의 경우 도급인의 지배·관리권이 **미치지 못하므로** 도급인의 책임범위로 보기 어려움
 - * 에어컨 설치 및 수리작업, 인터넷 설치 및 수리작업, 방문요양 등
- 이러한 작업장소 등에서 수급인 근로자의 산재예방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음

예시 5

- 지방자치단체 또는 환경공단이 하수처리시설 운영을 민간업체에 위탁하였고, 해당 사업장에서 민간업체의 근로자가 작업을 하다 **안전난간 미설치** 등으로 인한 추락사고가 발생한 경우
 - 그 사고가 도급인의 사업장 밖이라 할지라도 **도급인이 제공·지정하고 지배·관리하는 추락위험 장소이므로** 하수처리시설 운영을 위탁받은 민간업체는 제38조에 따른 사업주로서 책임을 지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환경공단은 제63조에 따른 도급인으로서 책임을 짐

예시 6

- 택배원이 **건설현장 내 배송업무**(수령인이 건설공사 도급인의 근로자, 수급인 또는 수급인의 근로자 등)를 한 경우
 - 건설공사도급인은 자신의 업무를 택배원에게 맡긴 것이 아니므로 도급으로 볼 수는 없음
 - ※ **건설현장의 위험요인**에 의해 사고가 발생할 경우 **건설사업자**는 건설현장 내 기계·기구 및 설비, 사설물 등의 위험으로부터의 **산업재해 예방 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음

3. 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법 제61조, 신설)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사업주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 개정 배경

- 최근 도급은 **비용절감, 위험 외주화** 등의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고, 사업주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전문인력 등의 확보가 어려운 **영세업체에 낮은 금액으로 도급을 할 유인**이 있음
- 이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 능력을 갖추지 못한 영세업체가 도급을 받아 그 소속 노동자가 산업재해를 입는 문제가 빈발***하므로 도급인은 적정한 **산재예방 조치 능력을 갖춘 수급인**에게 도급할 필요
- * 수급인근로자 사망 비율(%): ('14) 39.9 → ('15) 42.3 → ('16) 42.5 → ('17) 41.4

□ 개정 내용

- 사업주로 하여금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하도록 의무를 부과함
- 사업주는 **입찰단계**에서 ‘**도급사업의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수급업체 선정가이드라인**’ 내용을 명확히 제시하고,
- **계약단계**에서 **수급인의 안전수준을 평가**하고 법규 준수 및 안전보건 조치이행 등에 대한 약정을 하는 등 **수급인의 적격성을 평가하는 시스템** 등을 마련해야 함
- * 사업주가 적격수급인 선정 의무를 위반한 경우 직접적인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처벌규정은 없지만, 이러한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인해 제3자에게 인적·물적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민·형사 상 책임이 귀속될 수 있음

유사 입법례

화학물질관리법 제31조(유해화학물질 취급의 도급신고 등) ③ 도급인은 환경부령으로 정한 능력과 기준을 갖춘 자에게만 해당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을 도급하여야 한다.

외국 입법례(독일)

위험물질령 제15조(도급제한) ①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은 그 작업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기업에만 위탁되어야 한다.

4.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법 제62조)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등

법 제62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①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도급인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장에서는 그 사업장에서 사업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을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총괄책임자를 둔 것으로 본다.

* 해당 건설공사의 시공 및 안전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총괄책임자

③ 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할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권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52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대상사업)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해야 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관계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포함한 상시근로자가 100명(선박 및 보트 건조업, 1차 금속 제조업 및 토사석 광업의 경우에는 50명) 이상인 사업이나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해당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건설업으로 한다.

시행령 제53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 등) ①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2. 법 제51조 및 제54조에 따른 작업의 중지
3. 법 제64조에 따른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조치
4. 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관계수급인 간의 사용에 관한 협의·조정 및 그 집행의 감독
5. 안전인증대상기계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사용 여부 확인

□ 개정 배경

- 舊.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도급사업에서 **도급인의 근로자와 수급인(하수급인 포함)의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에**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도록 하였으나,

-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산업재해 예방책임을 부담하는 **도급인의 책임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도급인의 책임범위에 대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도록 할 필요

□ 주요 개정사항 개요

〈중 전〉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요건〉

도급인의 근로자와 수급인(하수급인 포함)의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

* 사업의 일부 도급 또는 전문분야 공사 전부 도급

⇒

〈개 정〉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요건〉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경우로서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를 포함)에서 작업하는 경우

□ 개정 내용

- **(지정범위)** 도급인의 책임범위 확대에 따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는 장소 범위 확대
 - 사업의 일부 도급 또는 전문공사 전부 도급, 같은 장소 여부 불문하고,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작업하는 경우**로 개정
 - * 도급인의 사업장 전체 + 도급인 제공·지정한 경우로서 지배·관리하는 21개 위험장소
 - 관계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포함한 상시근로자가 100명 이상*인 사업이거나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총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건설업의 경우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 * 선박 및 보트건조업, 1차 금속 제조업 및 토사석 광업의 경우 50명 이상
- **(업무내용)** 위험성평가의 실시, 작업 중지,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조치(법 제64조),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관계수급인 간의 사용에 관한 협의·조정 및 그 집행의 감독, 안전인증대상 기계 등과 자율안전 확인대상기계 등의 사용 여부 확인
- **(처벌규정)** 종전과 동일하게 의무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5.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법 제64조)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등

법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①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2. 작업장 순회점검
3.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지원
4.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제29조제3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실시 확인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대비한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 가. 작업 장소에서 발파작업을 하는 경우
 - 나. 작업 장소에서 화재·폭발, 토사·구축물 등의 붕괴 또는 지진 등이 발생한 경우
6. 위생시설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의 제공 또는 도급인이 설치한 위생시설 이용의 협조

* 휴게시설, 세면·목욕시설, 세탁시설, 탈의시설, 수면시설(시행규칙 제81조제1항)

② 제1항에 따른 도급인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의 근로자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와 함께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점검을 하여야 한다.

* 점검반 구성원: 도급인, 관계수급인, 도급인 및 관계수급인의 근로자 각 1명(시행규칙 제82조제1항)
 점검 실시 횟수: △건설업, 선박 및 보트 건조업: 2개월 1회 이상 △이외 사업: 분기 1회 이상

③ 제1항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작업장 순회점검, 안전보건교육 지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시행규칙 제79조(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협의체는 도급인 및 그의 수급인 전원으로 구성해야 한다.

② 협의체는 작업의 시작 시간,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 방법 등에 대한 사항을 협의해야 한다.

③ 협의체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해야 한다.

시행규칙 제80조(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 등) ① 도급인은 작업장 순회점검을 사업의 구분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건설업 등 2일 1회 이상, 그 외 1주일에 1회 이상)

② 관계수급인은 도급인이 실시하는 순회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해서는 안되며 점검결과 도급인의 시정요구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도급인은 관계수급인이 실시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필요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을 요청받은 경우 협조해야 한다.

개정 배경 및 주요내용

□ 개정 배경

- 도급사업에서 도급인으로 하여금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로써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구성·운영, 작업장 순회점검, 합동 안전·보건점검** 등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 舊.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수급인”의 개념에 **하수급인을 포함**하는 것으로 약칭*하면서 관련 조문의 취지상 하수급인을 포함하는 경우와 도급인과 직접 계약한 수급인만을 의미하는 경우의 **구별에 혼란** 초래
 - * 舊.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 “...수급인[하수급인(下受給人)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 이에 “**관계수급인***”의 개념 도입을 통해 도급인이 산업재해 예방 조치를 하여야 하는 **수급인의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
 - * 개정법 제2조제9호: 도급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에 각 단계별로 도급받은 사업주 전부

□ 주요 개정사항 개요

〈중 전〉

〈제29조 제2항〉

수급인과 동일한 산재예방 의무 외에 따른 산업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는 다음 각 호의 조치로 함

1.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2. 작업장의 순회점검 등 안전·보건관리
3.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지원
4. 작업환경측정
5. 작업 장소에서 발파작업을 하는 경우이거나 화재발생·토석붕괴사고 발생 경우에 대비한 경보의 운영과 수급인 및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경보운영 사항의 통보

〈개 정〉

〈제64조 제1항〉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 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1.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2. 작업장 순회점검
3.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 교육을 위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지원
4.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 교육의 실시 확인**
5. 작업 장소에서 발파작업을 하는 경우이거나 화재·폭발 등이 발생한 경우에 대비한 경보 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6. **위생시설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의 제공** 또는 **도급인이 설치한 위생시설 이용의 협조**

⇒

□ 개정 내용

- 수급인과 공동책임을 부담하는 안전·보건조치 의무와 구분하여 도급에 따른 **도급인 고유의 책임을 별도로 규정***하는 한편 도급인의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강화 등 **종전 규정을 정비**
 - * ▲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및 운영 ▲ 작업장 점검 ▲ 수급인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을 위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지원 ▲ 화재·폭발, 지진 등에 대비한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 휴게시설, 그 밖에 시설 설치 등을 위한 장소의 제공 또는 도급인이 설치한 시설 이용에 관한 협조
 - (안전보건교육 강화)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의 실시 확인 의무** 추가
 - (안전조치 강화)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발파작업 등을 하는 경우에 경보운영 사항의 통보**에서 **대피방법 등 훈련 의무 부과로 강화**
 - (보건조치 강화) 위생시설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의 제공 또는 도급인이 설치한 위생시설 이용의 협조 의무** 추가
 - (법 체계성) 도급인의 작업환경측정 의무는 법 체계성을 고려하여 ‘작업환경측정’ 규정*에 반영
 - * 개정법 제125조 ②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관계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도급인이 작업환경측정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작업환경측정을 하도록 하여야 함
- (처벌규정) 종전과 동일하게 의무 위반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적용기준

❖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합동 안전·보건점검, 작업장 순회점검 시 **관계수급인 포함 여부**

1 기존의 해석

- 舊. 「산업안전보건법」상 명문 규정은 없으나, 도급계약이 수차례에 걸쳐 다단계로 체결된 경우(중층적 도급)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는 원칙적으로 도급인과 ‘직접 계약한 수급인’이 참여하도록 하고

- 작업장 순회점검, 합동 안전·보건점검 등은 계약 당사자뿐만 아니라 중층적 도급관계에 있는 관계수급인 전체가 참여토록 운영

2

세부기준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 안전·보건에 관한 사업주 협의체에서는 도급인과 수급인 사업주가 **안전·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상시적이고 **정기적(매월 1회 이상)으로 협의**해야 하되,

* 작업의 시작시간, 작업 또는 작업장간 연락방법,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방법, 작업장에서의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사업주와 수급인 또는 수급인 상호 간의 연락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 그 구성원은 도급인 및 **도급계약을 직접 체결한 수급인**이 **협의체 구성원**이며 수급인으로 부터 **재하도급받은 관계수급인은 제외**

- 단, 작업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의 **상시적·정기적 협의**를 위한 입법취지 등을 고려할 때 **30일 이내에 종료되는 일시적 작업, 연간 총 작업일수가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간헐적 작업**의 경우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지 않아도 됨

- 다음의 경우에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구성·운영(합동안전·보건점검 포함) 대상이 아님[붙임 '참고 1' 참조]

▶ 자재·부품 납품, 우편물 배달 등

▶ 제품 구매 후 납품 및 이에 따른 설치·하자보수 등

* 온·오프라인을 통한 사무용품(책상, 컴퓨터 등) 구매 시 납품, 설치, 하자보수 등

▶ 용역제공 관련 회의 등 각종 회의 참석

▶ 사업장내 정수기 설치, 생수공급 및 이와 유사한 업무

▶ 위험기계·기구 정기검사, 안전·보건관리대행, 안전보건·경영진단(평가), 컨설팅, 행사, 교육 및 강의 등 사업장내에서 수행하는 위탁업무

▶ 기타 위와 유사한 출입업체가 수행하는 업무

〈합동 안전·보건점검〉

- 합동안전·보건점검*은 도급사업에서 도급인 및 관계수급인이 합동으로 수행 중인 작업에 대한 **안전·보건조치의 적정성** 여부를 점검·조치하여야 하므로
 - * ①도급인, ②관계수급인, ③도급인 및 관계수급인의 근로자 각 1명으로 구성, 건설업 및 선박·보트 건조업은 2개월에 1회(나머지는 분기 1회)이상 점검
 - 「산업안전보건법」의 이행의무 주체인 **도급인(원청) 주관**으로 실시하고 **관계수급인(하청 업체 및 재하청업체)도 참여**하되,
 - 관계수급인(또는 관계수급인을 대리하는 작업책임자)과 관계수급인의 근로자는 **당일 작업이 있는 경우에 한해** 자신의 작업장소에 대하여 점검

〈작업장 순회점검〉

- 작업장 순회점검*은 **도급인의 의무**이므로(법 제64조제1항제2호), 관계수급인이 해당 점검에 참여할 의무는 없으나,
 - * 2일에 1회(건설·제조·토사석광업·인쇄물출판·음악 및 오디오물출판·금속및비금속원료재생) 또는 1주일에 1회 이상 점검
 - 도급인이 실시하는 순회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해서는 안 되며 점검결과 도급인의 시정요구가 있으면 따라야 함(규칙 제80조제2항)

예시

- 사업을 총괄하는 도급인(A)이 4개 수급업체(B, C, D, E)에 도급하고, 수급업체 B가 도급받은 사업 일부를 3개 업체(①, ②, ③)에 재하도급한 경우 재하도급 사업장 ①, ②, ③의
 - **작업장 순회점검**(법 제64조제1항제2호)**이행의무**는 계약당사자인 B가 아니라 **최상의 도급인인 A**에게 있음
 - **합동 안전·보건점검**(법 제64조제2항)은 **A가 주관하여 자신의 근로자 및 관계수급인(B, ①, ②, ③)과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와 함께** 실시, 단 관계수급인과 그 근로자는 당일 작업이 있는 경우에 한해 당해 사업장(장소) 점검만 참여하여도 무방

6.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등(법 제65조)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등

법 제65조(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등) ① 다음 각 호의 작업을 도급하는 자는 그 작업을 수행하는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 시작 전에 수급인에게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문서로 제공하여야 한다.

1. 폭발성·발화성·인화성·독성 등의 유해성·위험성이 있는 화학물질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 또는 그 화학물질을 함유한 혼합물을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반응기·증류탑·배관 또는 저장탱크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개조·분해·해체 또는 철거하는 작업
2. 제1호에 따른 설비의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3. 질식 또는 붕괴의 위험이 있는 작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

시행령 제54조(질식 또는 붕괴의 위험이 있는 작업) 법 제6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이란 다음 각 호의 작업을 말한다.

1. 산소결핍, 유해가스 등으로 인한 질식의 위험이 있는 장소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2. 토사·구축물·인공구조물 등의 붕괴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시행규칙 제83조(안전·보건 정보제공 등) ① 법 제6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도급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해당 도급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수급인에게 제공해야 한다.

1. 안전보건규칙 별표 7에 따른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서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과 그 유해성·위험성
2. 안전·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대한 안전·보건상의 주의사항
3. 안전·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물질의 유출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필요한 조치의 내용

□ 개정 배경

- 舊,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서는 도급인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의무가 도급인의 다른 안전·보건조치 의무와 혼재되어 규정
-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의무를 별도로 규정하여 정책대상자들이 알아보기 쉽게 할 필요가 있으며, 동 규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 등을 마련할 필요

□ 주요 개정사항 개요

<종 전>	<개 정>
<정보 제공 방법 및 시기> 해당 작업 시작 전에 수급인에게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정보 제공 방법 및 시기> 해당 작업 시작 전에 수급인에게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문서로 제공해야 함
<신 설>	<확인 의무> ⇒ 도급인은 수급인의 노동자가 제공된 정보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받고 작업을 수행하는지 확인해야 함
<신 설>	<작업 개시 연기 등> 수급인은 도급인이 정보 미제공 시 도급작업을 하지 않을 수 있고, 이 경우 계약 지체에 따른 책임은 지지 아니함

□ 개정 내용

- **(정보제공 방법 및 시기)** 해당 작업 시작 전에 수급인에게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문서로 제공하도록 규정한 **종전 시행규칙**의 내용을 **상위법인 법률에 명시**함
 - * 위험성평가에 의하여 확인된 안전과 보건에 관한 위험 정보
- **(실효성 확보)** 수급인이 제공받은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에 따라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 조치를 하였는지 **도급인이 확인하도록 의무 부과**
 - 만약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수급인은 **도급작업을 하지 않을 수 있고, 이 경우 계약 지체 책임이 면제됨**을 명시함
- **(처벌규정)** 종전과 동일하게 의무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7. 도급인의 관계수급인에 대한 시정조치(법 제66조)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도급인의 관계수급인에 대한 시정조치) ①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관계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받은 작업과 관련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면 관계수급인에게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② 도급인은 제65조제1항 각 호의 작업을 도급하는 경우에 수급인 또는 수급인 근로자가 도급받은 작업과 관련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면 수급인에게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 개정 배경

- 舊.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6항에서는 수급인 또는 수급인의 근로자가 도급 규정(제29조 제1항, 제29조제5항) 작업과 관련하여 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 도급인에게 위반행위 시정 조치 의무를 부과
 - 법문언 상으로는 시정대상이 명확하지 않아 수급인 근로자에게 위반행위 시정지시 등을 하는 경우 불법파견의 소지가 있음
 - * 舊.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⑥ 제1항에 따른 사업주 또는 제5항에 따라 도급하는 자는 수급인 또는 수급인의 근로자가 해당 작업과 관련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또한, 舊. 「산업안전보건법」은 도급인에게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의무부과 및 처벌규정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 수급인 또는 수급인 근로자의 위반행위를 도급인이 반드시 시정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시정조치 의무 위반에 대해 도급인을 처벌하도록 규정
 - 수급인 또는 수급인 근로자가 위반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급인에게 시정조치 의무 위반에 대해서까지 처벌하는 것은 과도한 제재일 수 있으므로 시정조치의 실효성을 확보 하도록 개정 필요

□ 주요 개정사항 개요

〈종 전〉	〈개 정〉
〈시정 대상〉 수급인 또는 수급인의 근로자가 해당 작업과 관련하여 법 등을 위반한 경우에 도급인은 위반 행위를 시정조치를 하도록 규정 → 수급인의 근로자에게 시정조치 시 불법파견 문제 〈처벌대상 명확화〉 수급인 또는 수급인의 근로자가 법 위반행위 시 반드시 도급인이 시정조치를 하도록 규정 + 시정 조치 의무 위반 시 처벌 → 도급인의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 시 처벌도 있으므로 과도한 제재 문제	〈시정 대상〉 도급인은 관계수급인에게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관계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조치에 따라야 함 〈처벌대상 명확화〉 도급인이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로 규정(종전: '하여야 한다')하는 한편 수급인이 도급인의 시정조치에 불이행 시 수급인을 처벌 하도록 규정

□ 개정 내용

- **〈시정대상〉** 관계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받은 작업과 관련하여 법령 위반 시 시정조치 대상을 **관계수급인으로 명확화**
 - 도급인은 관계수급인에게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요구하거나 권고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 **〈처벌대상 명확화〉** 개정법에서는 도급인의 시정조치를 가능 규정(할 수 있다, 종전: 하여야 한다)으로 명시하는 한편 **도급인의 시정조치에 따르지 않은 관계수급인을 처벌하도록 명확히 규정**
- **〈처벌규정〉** 관계수급인이 도급인의 시정조치에 따르지 않은 경우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참고 1

(질의회신) 외주 제조물 또는 판매물 관련 사업장 출입시 도급인의 책임 여부

[본 기준은 일반적인 원칙이며, 개별적인 사례에서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판단 필요]

- **(원칙)** 사업주가 제조를 의뢰한 제조물, 구매한 물품 등(이하 ‘제품 등’)을 제조·판매업자 소속 근로자가 사업장에 방문하여 **상담·설치 등 부수작업*** 수행 시,
 - * **(예시)** 사무집기, 컴퓨터 등 제작 의뢰·판매 협의, 납품 및 설치, 하자보수, 소모품 보충 등 부가업무
 - ‘부수작업’은 제조·판매업자가 제품 등 **제조 또는 판매**라는 본질적인 업무에 **필연적·부가적**으로 동반되는 제조·판매업자 자신의 업무에 해당
 - 따라서 이 경우 ‘부수작업’은 도급인이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하여야 하는 **작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 다만, **제조·판매업자** 소속 근로자 등이 제품 등 사용 사업장에서 ‘부수작업’ 중 **해당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제품 등 사용 사업주는 **안전조치 의무위반**(법 제38조, 제39조 등) **등으로** 책임을 질 수 있음
- **(예외)** ‘부수작업’ 중 제품 등 **설치 및 유지보수작업**이 **사용 사업주의 사업장 내에서** 그 사업주의 **관리·감독하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 동 설치 및 유지보수작업은 제조·판매에 동반되는 **단순한 부수적인 작업이 아니라, 도급인이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취해야 할 작업**이라 할 수 있음
 - 또한, ‘부수작업’ 중 하자보수가 제조·판매업자 자신의 업무라 할지라도 **보증기간이 지났거나 사용자 귀책으로 발생한 고장** 때문이라면 **도급인의 책임작업**이라 할 수 있음
- **(경비, 청소 용역 등과 차이)** 사업주가 의뢰한 제조물 제작은 사업장(사업주 제공·지정 및 지배·관리 장소 포함) **외부에서** 수행되고, ‘부수작업’만 사업장 내에서 **단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반면,

- 경비, 청소 등 용역서비스는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부수적·보조적 업무라 하더라도 해당 사업장 내에서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도급인의 책임작업임

[제품 납품 및 이에 따른 부가 서비스, 방문 등 적용 예시]

- 자재·부품 납품
- 제품 등 구매 후 납품 및 설치, 하자보수(납품 및 설치 등은 제조·판매업자의 부수적인 업무)
 - * 온·오프라인을 통한 사무용품(책상, 컴퓨터 등) 구매 시 납품, 설치, 하자보수 등
- 설계업체에서 설계도면 협의 등 각종 회의 참석
- 사업장 내 정수기 설치, 생수 공급 및 이와 유사한 업무
- 위험기계·기구 정기검사, 안전·보건관리대행, 안전보건·경영진단(평가), 컨설팅, 행사, 교육 및 강의 등 사업장 내에서 수행하는 위탁업무
- 기타 위와 유사한 출입업체가 수행하는 업무

참고 2 (질의회신) 건물관리를 위탁할 경우 도급인 책임 여부

- **(도급인 해당)** 사업주의 사업목적 달성에 건물관리업무가 필요하거나 직·간접적으로 관련있는 경우 ⇨ 도급인의 책임작업에 해당

* (예시)

- ① 백화점 사업주가 점포 **건축물 관리**를 건축물유지관리업자에게 위탁
→ 건축물 관리는 **백화점 사업에 필요한 업무**
- ② 제조업자가 사업장 **시설물 관리**를 건축물유지관리업자에게 위탁
→ 시설물 관리는 **생산 등 업무 수행에 필요한 업무**
- ③ 부동산업을 하는 사업주가 사업의 목적으로 구입한 빌딩의 관리를 건축물유지관리업자에게 위탁
→ 부동산에 대한 관리는 부동산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업무**
- ④ 사업주가 **소유건물 일부를 자신의 사업에 이용**하고 일부는 임대하면서, 건물관리를 건축물유지관리업자에게 위탁
→ 건물관리는 일반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업무**
* 은행 등 금융업을 하는 사업주가 자사 사옥 중 일부만 사용하고 일부는 카페 등 타 사업주에게 임대한 경우 등

- **(도급인 미해당)** 건물관리가 사업주 본연의 사업과 무관한 경우 ⇒ 도급인의 책임작업에 해당하지 않음

* (예시)

- ① **개인이** 사적으로 소유한 건물의 관리를 건축물유지관리업자에게 위탁
→ **도급인 미해당**, 이 경우 건축물유지관리업자가 업무 중 일부(청소 등)를 타인에게 위탁한 경우 건축물유지관리업자가 도급인에 해당

- ② 사업주가 **자신의 사업(제조업, 금융업 등)과 무관하게 사적으로** 매입한 건물에서 자신의 사업을 수행하지도 않고, 건물 전체를 임대하면서 그 관리를 건축물유지관리업자에게 위탁한 경우

→ 도급인 미해당

- ③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업무를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한 경우

→ 도급인 미해당, 공동주택관리법상 관리주체는 주택관리업자 등

[빌딩관리 중층적 하도급 관계에서 도급인 판단 여부('20.2.26, 질의회신)]

❖ 00소재 00스퀘어 빌딩 관리업체인 D업체 소속 근로자가 당직 순찰 중 지하2층 개구부 내부 드라이에어리어에서 지하7층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사고 관련

- 빌딩 소유주는 **사모펀드(부동산 매입형 펀드, 집합투자업자)**, 관리는 **A신탁회사***로서 건물 **종합관리업무**(재산 인수/인계 관련 업무, 부동산 관리업무, 임대마케팅 및 임대관리업무, 주차장 관리업무 등) **일체를 B사에 위탁**

* 투자신탁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자로서, 집합투자업자와 해당 건물을 취득하여 수익을 추구할 것을 목적으로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집합투자업자의 신탁재산 운용 지시에 따라 자산의 취득·처분의 이행, 이익금 지급 등의 업무 수행

- B사는 A사로부터 건물 종합관리업무 일체를 위탁받아 부동산 임대차 관리 및 마케팅 업무를 수행, 이중 시설·미화·보안·건물 유지보수 업무 일체를 C사에 위탁

- C사는 건물 관리업무 일체를 위탁받아 보안·미화 업무를 수행하고, 건물 관리업무 중 위탁 받은 시설·방재업무는 D사에 재위탁한 중층적 하도급 관계

질의 내용

- 중층적 하도급 관계에서 D업체 소속 근로자가 사업주의 안전조치 위반으로 사망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상 **도급인 책임 주체를 A, B, C 중 어느 업체로 보아야 하는지?**

회신 내용

- 도급이란 일의 완성 또는 대가의 지급여부와 관계없이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으로 도급 자체만으로는 처벌대상이 아님
 - * 도급 자체로의 처벌은 도급의 금지(법 제58조) 및 도급의 승인(법 제58조) 위반시 과징금 부과(법 제161조) 대상
-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도급인, 수급인, 관계 수급인에게 각각의 의무를 부여하고
 - 도급인의 책임범위를 ①도급인의 사업장내의 모든 장소, ②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경우로서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추락 등 21개 위험장소로 대폭 강화하였음
- 질의내용상 A사는 부동산업 등의 사업 목적으로 구입한 빌딩 관리를 전문관리업체 B사에 위탁한 경우이며 빌딩의 가치유지나 제고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경우라면
 - 동 빌딩 관리는 A사 본연의 사업수행을 위해 직·간접적으로 관련성이 있으므로 A사를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 책임주체로 볼 수 있음
- 귀 질의와 같이 도급사인 A사가 별도의 장소(사업장 밖)에 있는 경우 그 장소가 도급인이 제공·지정한 경우로서 지배·관리하는 법령상 규정하는 위험장소에 해당한다면 A사는 도급인으로서 책임을 짐
 - * 도급인의 지배·관리하에 있는지 여부는 관계자 조사 등 수사를 통해 확인해야 할 사항(안전시설의 책임주체, 이행 가능성, 범죄성립 요건 등 종합 검토)
- 만일, A사가 지배·관리를 하지 않고 B사가 ①독립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②안전시설 등의 설치·관리업무도 B사에 귀속된다면 B사가 도급인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상 규정 의무의 이행책임이 있음(이 경우 C사는 수급인, D사는 관계 수급인에 해당됨)

참고 3

(질의회신) 수급인이 대규모일 경우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운영 방법

- **(사례)** 수급인의 범위에 부수적이고 보조적인 업무도 포함되고, 도급인의 책임범위에 제공·지정한 장소로서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장소까지 포함됨에 따라 **수급인이 대규모(예 : 200여명)일 경우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운영 방법**
- **협의체 구성·운영**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업주 협의체는 **도급인과 수급인 사업주(관계 수급인은 제외)**로 구성·운영하여야 하며
 - 30일 이내에 종료되는 **일시적 작업** 또는 연간 총 작업일수가 60일 이내의 **간헐적 작업의 경우** 협의체 구성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 또한, 자재납품, 회의 참석 등 **일시적 출입자도 대상이 아니지만** 이를 제외하더라도 참석 대상이 수십~수백명인 경우 **대면회의로 운영시 협의체 실효성 미흡**
- 협의체 안전*인 작업장간 연락방법 및 작업공정 조정 등을 위하여는 **대면회의가 가장 바람직할 것**이나, 법령에서는 **대면/비대면 등 운영방법까지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 작업의 시작시간, 작업 또는 작업장간 연락방법,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방법, 작업장에서의 위험성 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사업주와 수급인 또는 수급인 상호 간의 연락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 따라서, **부문별·섹터별로 분할(20~30명 내외)해서 운영**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며,
 - 영상회의가 가능한 경우 **영상회의**로 개최, 대면회의와 영상회의를 병행하여 개최할 수도 있음
 - 부문별·섹터별로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는 **근로자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수급인 순으로 적정인원(30인 내외)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나머지 수급인에 대해서는 의견청취 및 회의 결과의 서면제공 등 협의체의 간접적 참여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매뉴얼

발 행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

전 화 / (044) 202 - 7723

발행일 / 2020년 7월

인 쇄 / 대양

〈비매품〉